

#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효과-

2000. 12

박기백 · 이명현

**Kipf** 한국조세연구원

## 서 언

한 나라의 경제활동에 있어 정부 예산 규모의 결정, 재정 운용 방향의 설정, 조세제도의 개편 등 직·간접적으로 세수 예측에 영향을 받는 분야가 많다. 또한 해당 분야는 자원의 배분, 소득 분배 및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수추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 변동, 구조조정, 세율 및 감면 제도의 변화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수의 변화도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추계 분야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정 세목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미시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데도 일부 원인이 있고, 연구자들의 관심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원에서는 근로소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수추정이 시도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법인세와 관세에 대한 세수추계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법인세와 관세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세수의 변동이 심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수 효과를 추정하는 바, 부가가치세 또한 대표적인 세목이고, 향후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와 부가가치세 감면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수추계 기법 개발의 일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하나의 보고서로 통합하였

다. 법인세의 경우 거시자료를 사용하지만 법인세 세액계산 단계별 추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관세는 수입품을 원자재·자본재·소비재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세수추계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과세효과에 있어서는 단일 재화, 다수 재화, 모든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의 과세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세수추계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조세환경 하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해당 세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모형 설정 및 적절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세수를 추정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세수 예측력 제고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법인세 세수추계와 부가가치세의 감면의 과세효과는 당 연구원의 박기백 박사가, 관세의 세수추계는 이명헌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수의 제안을 한 본원의 성명재 박사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또한 자료 및 원고정리에 힘써 준 본 연구원의 김영철·김용대 주임 연구원, 변경숙·최미영 연구조원 및 출판과 직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200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유 일 호

# 목 차

I. 서 론	11
II. 법인세 세수추계	13
1. 연구 배경	13
2. 법인세 개요	14
3. 법인세 세수 추정	22
4. 요약 및 결론	48
III. 관세 세수추계	51
1. 서론	51
2. 품목군별 관세세수 동향	54
3. 추정모형의 설정	60
4. 추정결과	63
5. 관세 세수예측	67
6. 요약과 결론	71
IV.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효과	73
1. 연구 배경	73
2. 조세지출(감면) 개요	74
3. 부가가치세 제도와 감면 현황	77
4. 1개 재화 과세 전환효과	81
5. 모든 재화 과세	94
6. 결론 및 시사점	100

참고문헌 .....	102
<부록 1> 법인세 징수관련 세법 규정 .....	104
<부록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관련 세법 규정 .....	109

## 표 목 차

<표 II- 1> 법인세율의 변화 .....	20
<표 II- 2>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의 변화 .....	21
<표 II- 3> 추정에 사용된 전망치 .....	25
<표 II- 4> SUR 추정결과 .....	28
<표 II- 5> SUR 추정결과 (유의한 변수) .....	29
<표 II- 6> 추정값 비교 .....	33
<표 II- 7> 결산 시점별 법인 수 .....	35
<표 II- 8> 법인세 징수와 시점 .....	35
<표 II- 9> 원천분 추정결과(OLS) .....	36
<표 II-10> 사업연도소득 추정결과 1 (OLS) .....	38
<표 II-11> 사업연도소득 추정결과 2 (OLS) .....	38
<표 II-12> 결손금 추정결과 1 (OLS) .....	39
<표 II-13> 결손금 추정결과 2 (OLS) .....	40
<표 II-14> 이월결손금 추정결과 1 (OLS) .....	41
<표 II-15> 이월결손금 추정결과 2 (OLS) .....	42
<표 II-16> 이월결손금 추정결과 3 (OLS) .....	42
<표 II-17> 산출세액 추정결과 1 (OLS) .....	43
<표 II-18> 산출세액 추정결과 2 .....	44
<표 II-19> 산출세액 추정결과 3 (OLS) .....	45
<표 II-20> 산출세액 추정결과 4 (OLS) .....	45
<표 II-21> 신고분 세수 추정결과 (OLS) .....	47
<표 II-22> 추정값 비교 .....	48
<표 III- 1> 연도별 관세 및 국세 세수의 변화 .....	52
<표 III- 2> 가공도별 수입품 분류표와 실행관세율(1999년) .....	55

<표 III- 3> 관세세수와 수입액 및 평균관세율의 변화 (1990년~1999년) .....	56
<표 III- 4>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수입액 가중평균 실적 관세율 변화 .....	60
<표 III- 5> 관세세수합수 추정결과 .....	64
<표 III- 6> 경상GDP 예측치 .....	67
<표 III- 7> 실적세율 불변가정하의 세수전망 .....	68
<표 III- 8> 1998년 실적세율과 세율변화 시나리오 .....	69
<표 III- 9> 관세율 인하의 세수효과 예측 .....	70
<표 IV- 1> 산업연관표의 형태 .....	89
<표 IV- 2> 주요 상품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1995년 기준) .....	92
<표 IV- 3> 면세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 .....	98
<표 IV- 4>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세수추계 (1995년도) .....	98
<표 IV- 5> 조세지출이 큰 재화 (모든 재화 과세의 경우) .....	100
<부표 II-1> 면세대상별 조세지출 규모 .....	137

## 그림목차

[그림 II-1] 법인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	16
[그림 II-2] 조세 및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	16
[그림 II-3] 법인세 증가율과 GDP 증가율 비교 .....	17
[그림 II-4] 원천분과 신고분 세수 추이 .....	18
[그림 II-5] 원천징수 부과세액 및 평균 세율 .....	18
[그림 III-1] 수입액과 관세징수액의 연도별 변화 .....	56
[그림 III-2] 품목군별 관세세수 변화(1990년~1999년) .....	57
[그림 III-3] 품목군별 수입액 추이(1990년~1999년) .....	59
[그림 III-4] 수입 가중평균 관세율의 연도별 변화 .....	59
[그림 IV-1] 조세감면 추세 .....	77
[그림 IV-2] K번째 재화의 조세지출 계산 .....	91

## I. 서 론

정확한 세수추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원의 배분, 소득 분배 및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예산 규모 및 분야별 배분, 조세제도의 개편 등이 직·간접적으로 세수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수추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이는 활용 가능한 미시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그 원인이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세수추계 또는 세수효과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보면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국세 전체에 대해 항목별로 추계한 연구(성명재, 1995)가 있고, 특정 세목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미시적 자료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세수추계(성명재, 1997), 수요함수 추정을 바탕으로 한 개별소비세 세수추계(성명재, 1998),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세수추정(성명재·박종규, 1999)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세목중 법인세와 관세에 대한 세수추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당 세목이 변동이 심하고,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면세의 세수감소효과도 추정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세목이고,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는 법인세, 관세에 대한 세수추계와 부가가치세 감면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추정이 별도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는 경기에 따른 세수 변동성이 매우 커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안정적인 세목에 비하여 세수추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구조적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세수추정을 위하여 이전과 같이 거시자료를 사용하지만, 세액의 계산 단계별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 기존의 관세 세수추계가 단일 함수에 의한 세수추계 방식을 사용하는 문제점, 즉 수입품의 성격이나 가공도별로 상이한 관세율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입품을 원자재·자본재·소비재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감면의 과세전환효과에 대해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개별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와 모든 면세재화가 과세로 전환된 경우로 나누어 과세효과를 살펴보았다.

세수추계 및 세수효과 측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이처럼 독립적인 주제를 가진 세 가지 연구가 이 세 연구를 묶어 본 보고서로 발간한다.

## Ⅱ. 법인세 세수추계

### 1. 연구 배경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의 구조는 소득세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적용하므로 과세대상이 모든 소득이 되는 반면,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법인세의 징수액 추이를 보면 1975년 약 1천억 원에서 1998년에는 약 10조 원으로 100배 정도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중도 1975년에는 GDP의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GDP의 2%를 상회하고 있다.

법인세 세수의 특징은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안정적인 세목에 비하여 법인세는 세수를 추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구조적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최근의 법인세 세수추정은 좀더 정확한 추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2000년 당초 예산은 11조 3,621억 원이었으나 수정된 전망치는 15조 8,493억 원으로 편차가 4조 5천억 원 수준이다.

법인세 세수 구조의 변화도 법인세의 세수추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법인세에서 신고분 세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원천분 세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원천분이 신고분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점도 법인세 세수추정 방법을 정치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추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미시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이 정확한 세수추계를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액단계별로 법인세를 추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미시자료가 없다는 제약조건하에서 정확하게 법인세 세수추정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 2. 법인세 개요

법인세의 징수대상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영리, 비영리)이다. 그리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특별부가세(주로 부동산), 청산소득이다.

법인세의 세액은 소득세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먼저 소득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비용에는 기부금, 접대비,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이 포함된다. 해당 소득에서 5년 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현재 1억 원 미만은 16%, 1억 원 초과분은 2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sup>1)</sup>.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한 다음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가하면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된다. 법인은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특별부가세는 소득세의 양도소득세와 유사하며 과세대상은 주로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양도차익이다. 세율은 일반자산의 경우 15%, 미등기전매의 경우 30%가 적용되고 있다.

---

1) 조합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가. 법인세 납부

세금의 납부는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과세, 정산납부로 구성된다.<sup>2)</sup> 중간예납은 내국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전체 법인세에서 감면된 법인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사업연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징수는 법인에 이자 및 배당소득, 비영업대금,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납부하며 세율은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과 동일하다. 수시과세는 법인세 포탈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정해진 기일 이전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납부세액에서 이미 징수된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감면세액을 제한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이므로 신고분 징수세액은 주로 전년도 법인소득이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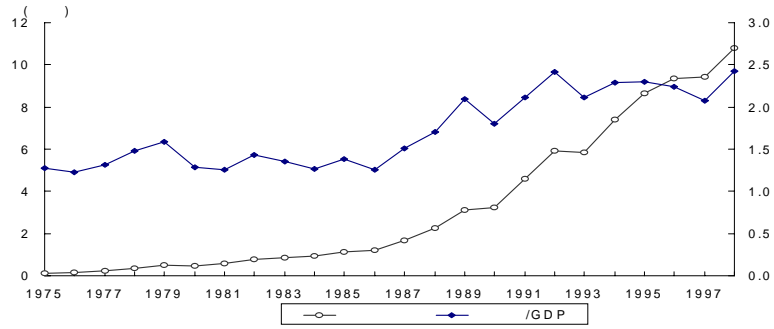
### 나. 법인세 추이

법인세에 대한 추정에 앞서 법인세 자료를 살펴보자. 먼저 징수액 추이를 보면 1975년 약 1천억 원에서 1998년에는 약 10조 원으로 100배 정도 증가하였다. 법인세 징수액을 GDP에 대비하여 보면 1985년에는 GDP의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비중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GDP의 2%를 상회하고 있다.

---

2) 관련 조문은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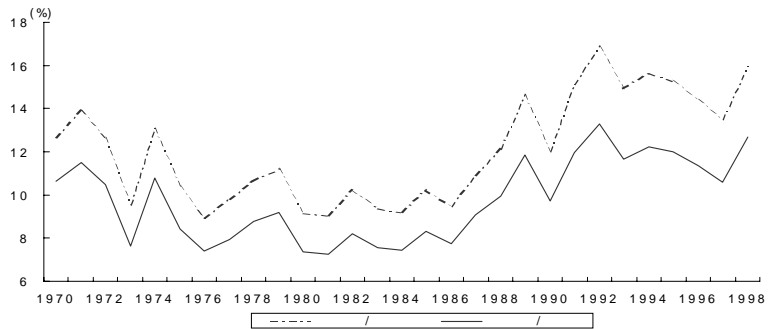
[그림 II-1] 법인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전체 조세수입 또는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1971년에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이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1981년에는 10% 이하로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14~1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법인세의 세입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I-2] 조세 및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그리고 법인세 세수의 증가율과 GDP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GDP에 비해 법인세의 등락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세수는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기가 악화되면 GDP 증가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법인세수의 변화가 경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경상성장률 외에 실질성장률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3] 법인세 증가율과 GDP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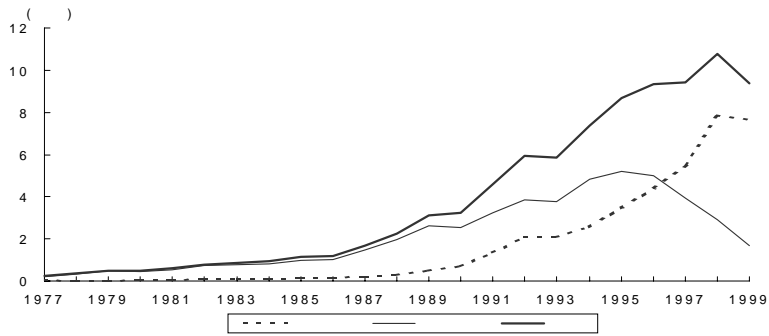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다음으로 원천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자. [그림 II-4]를 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법인세 징수액의 대부분이 신고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원천징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도에는 신고분과 원천분의 세수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원천분이 신고분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전망에 따르면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2000년도부터는 신고분이 원천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천징수 부과세액을 보면 1990년대 들어 원천징수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대비 부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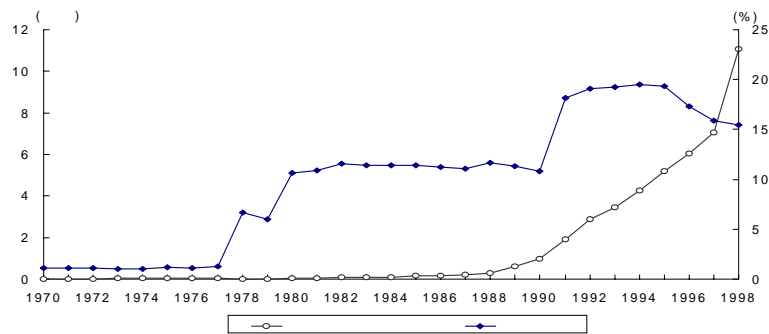
액, 즉 평균 원천징수 세율을 보면 1977년까지 1% 수준이었으나 1978~1979년도에는 약 5%, 1980년도 이후부터는 약 10%, 1991년 이후는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1995년 이후로는 평균 세율이 낮아져, 1998년에는 15% 수준이 되었다. 1998년의 경우 평균 세율이 낮아졌지만 부과세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II-4] 원천분과 신고분 세수 추이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조세연구원 내부 자료

[그림 II-5] 원천징수 부과세액 및 평균 세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다. 주요 법인세 관련 규정 변화

세추추계를 위해서는 주요한 법인세 관련 규정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세추추계에 사용할 수 있는 계량적 변수가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 변수의 수치를 조정하면 되지만 계량적 변수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는 질적인 변수로 대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세수와 관련이 깊은 과세대상과 세율, 그리고 원천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자. 먼저 법인세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특별부가세 제도가 1974년의 세제개편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법인세 세율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표 II-1>참조). 세율이 변한 경우도 있고, 구간이 조정된 경우도 있으며, 법인 구분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법인은 일반법인(비공개), 공개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공개법인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세법상의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1982년 세법 개정으로 비공개와 공개법인간의 구분을 두지 않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상의 구분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법인으로 법인의 공개 여부보다 법인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 특히 공공법인에 대한 우대가 있었다.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1990년도 세법 개정부터 법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를 두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은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으로 구분되어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공공법인과 일반법인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 다만 농협 등 조합법인에는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의 변화는 <표 II-2>와 같다. 가장 큰 변화는 1976년에 지정 및 법정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자 및 배당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행해지고 있다.

## &lt;표 II-1&gt; 법인세율의 변화

	일반(중소)법인	공개(상장)법인	비영리(학교)법인
1971	100만 원 이하 20% 100만 원 초과 30% 500만 원 초과 40%	100만 원 이하 16% 100만 원 초과 20% 500만 원 초과 27%	100만 원 이하 20% 100만 원 초과 30% 500만 원 초과 35%
1974	300만 원 이하 20% 300만 원 초과 30% 500만 원 초과 40%	500만 원 초과 20% 500만 원 초과 27%	500만 원 초과 20% 500만 원 초과 27%
1975	동일	500만 원 초과 20% 500만 원 초과 27%	500만 원 초과 20(15)% 500만 원 초과 27%
1976	동일	500만 원 초과 20(25)% 500만 원 초과 27(33)%	동일
1978	300만 원 이하 20(15)% 300만 원 초과 30(25)% 500만 원 초과 40(35)%	500만 원 초과 20(25)% 500만 원 초과 27(35)%	동일
1980	5천만 원 이하 25% 5천만 원 이상 40%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 원 초과 25% 5천만 원 초과 33%	5천만 원 초과 20% 5천만 원 초과 27%
1981	5천만 원 이하 22% 5천만 원 이상 38%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 원 초과 22% 5천만 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일반법인(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5천만 원 이하 20% 5천만 원 이상 30(33)%	5천만 원 초과 20% 5천만 원 초과 27%	5%
1988	8천만 원 이하 20% 8천만 원 이상 30(33)%	8천만 원 초과 20% 8천만 원 초과 27%	3억 원 이하 10% 3억 원 이상 15%
1990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이상 34%		3억 원 이하 17% 3억 원 이상 25%
1993	1억 원 이하 18% 1억 원 이상 32%		3억 원 이하 18% 3억 원 이상 25%
1994	1억 원 이하 18% 1억 원 이상 30%		1억 원 이하 18% 1억 원 이상 25%
1995	1억 원 이하 16% 1억 원 이상 28%		1억 원 이하 16% 1억 원 이상 25%
1997	1억 원 이하 16% 1억 원 이상 28%		

<표 II-2>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의 변화

		대 상	금 액 계 산
1960		국무원령 규정 소득금액	영업세 과표×소득률 ×법인세율
1961. 8.		영업과세표준	100분의 1
		지급 소득금액	영업세 과표×소득률 ×법인세율
1961. 12.	일반	사채, 지불준비금, 신탁이익 등 사익이나 사식의 배당 등 비영업대금의 이자	100분의 12 100분의 12 100분의 15
	법정	영업세과세표준 금액 지급	100분의 1
	지정	영업세과세표준 × 소득률	법인세율
1965	일반	사채, 지불준비금, 신탁이익 등 사익이나 사식의 배당 등 비영업대금의 이자 부동산소득금액	100분의 12 100분의 12 100분의 10 100분의 1
	지정	영업세과세표준	100분의 1
1967	일반	사채, 지불준비금, 신탁 이익 사익이나 사식의 배당 등 비영업대금의 이자 부동산소득금액 기타소득(신설)	10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1 100분의 15
1968	일반	비영업대금의 이자 기타소득(폐지)	100분의 20 -
1971	일반	예적금, 어음, 신탁이자 등 사채 이자 비영리자금의 이자 기타소득(신설)	100분의 5 100분의 20 100분의 20 100분의 20
1974	일반	이자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원천징수 세율
	법정	물품 판매, 인도 물품대금, 용역대가 지급	100분의 1
	특별	공연료, 물품 인도, 법인의 부동산 임대료 지급	100분의 1

## &lt;표 II-2&gt;의 계속

		대 상	금 액 계 산
1976	일반	일반 원천징수 제외 모두 폐지	
1980	일반	이자, 배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 축소 - (국민투자채권, 재정증권, 양곡기금증권, 기타 금융채권, 기타 채권 이자 과세) 분리과세 세율을 5%에서 10%(예금이자)	
1982	일반	국공채 이자 등 비과세를 10% 분리과세	
1989	일반	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금액 과세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이자 과세	
1990	일반	원천징수 세율 인상 20% 가명거래에 대한 세율 인상	
1992	일반	특정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20%로 인하	
1993	일반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 과세	
1994	일반	원천징수세율을 분리, 종합과세분 모두 15%로 인하 법인수취 기타소득 원천징수 면제	
1998. 10.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22%로 인상(1998년 10월부터)	
1999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20%로 인하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조세정책 50년』, 재정경제부, 『간추린 개정 세법』

## 3. 법인세 세수 추정

## 가. 기존 연구

법인세의 세수 추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성명재·현진권(1994)의 경우 거시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추정하였다. 사용된 변수는 사실상 GNP(또는 비농림어업 GNP) 하나였으며 시간추세, 더미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었다. 더미변수는 세법 개정의 효과를 포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1971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율의 변화나 세율구간의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년도 및 당년도 GNP(또는 비농림어업 GNP)에 대한 계수의 합이 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추세가 양수로 보고 되었다. 이를 해석하면 법인세 세수가 GDP에 대해서는 탄력적이지 않고, 법인세 세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이 되므로 해석과 추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성명재(1995)는 이전의 모형에 최고세율(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을 추가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년도 GNP의 계수는 약 1~1.2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GNP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의 경우는 일반법인의 전년도 세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약 0.03이었다. 신고분과 원천분을 SUR (seemingly uncor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중 대표적인 결과를 보면 신고분의 경우 전년도 세율에 대한 계수가 0.019, 전년도 GNP에 대한 계수가 0.066으로 나왔다. 공익법인 세율의 계수가 -0.015 등 음수인 점, GNP에 대한 계수가 너무 작고 유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반면 원천분의 경우에는 일반 및 공공 법인 세율의 계수가 0.017과 0.081로 나왔으며, GNP에 대한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수를 추정하기 위한 적절한 설명변수가 설정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법인세의 추정은 국민계정에서 GDP에 대한 세전 이윤을 추정한 다음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법인세수를 추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법인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가 없어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시 및 거시 자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정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액 계산방식을 사용하되 거시자료를 기준으로 법인세 세수를 추정해 본다.

## 나. 원천분/신고분 추정방식

### 1) 추정 모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전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법인세수를 추정한 다음에 법인세 납부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인세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신고분 세수와 원천분 세수 사이에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명재(1995)의 경우처럼 SUR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추정방법도 이전의 연구와 동일하게 IFGLS(반복가용일반최소자승법)를 사용하였다<sup>3)</sup>. 따라서 이전의 연구와 방법론 상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설명변수가 이전의 연구와 다른 형태를 가진다.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GDP 및 실질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2000년도에 조정한 수치를 사용하였고 해당 자료는 한국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구했다. 그리고 이자율은 시장 실세금리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원천분과 신고분 세수의 자료는 재정경제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세율, 구간, 원천징수세율 등 여타 세수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의 조세개요와 조세관련통계자료집,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에서 구했다. 향후 세수의 추정에 사용된 전망치는 한국조세연구원의 거시전망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법인세수의 전망치는 거시전망이 달라짐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성명재(1995) 참조.

<표 II-3> 추정에 사용된 전망치

(단위 : %)

	1999	2000p	2001p
불변GDP 성장률	10.7	9.13	4.34
경상GDP 성장률	8.9	9.1	6.08
회사채수익률(연평균)	9.25	9.1	10.29

주 : p는 추정치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내부 자료

가) 원천분

먼저 원천분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보자. 원천징수의 종류는 일반·지정·법정 원천징수제도가 있었으나 1976년 이후로 일반원천징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천징수의 대상은 매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정·법정 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자,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만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법인이 수취하는 이자 및 배당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것이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DP, 실질성장률, 이자율, 원천징수세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법인세 원천분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GDP와 실질성장률을 법인의 저축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저축 형태에 대한 변수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sup>4)</sup>. 그리고 이자소득은 저축 규모에 이자율을 곱한 것이므로 이자율도 변수로 사용하였고 세액은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것이므로 원천징수

4) 기업의 자원 조달에 있어서 Debt/Equity 분배가 중요하다는 논평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미시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여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논평자의 지적대로 이자율이 저축이자율인지, 대출이자율인지 불분명한 문제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세율 역시 변수로 사용하였다<sup>5)</sup>. 또한 추세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상수와 연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법인세 원천분에 대한 추정 수식은 다음과 같다.

$$\log(T_w) = \beta_0 + \beta_1 \log(GDP) + \beta_2 r + \beta_3 t_r + \beta_4 g + \beta_5 y + e \quad (1)$$

여기서  $T_w$ 는 원천분 법인세수이며,  $r$ 은 이자율,  $t_r$ 은 이자소득 세율,  $g$ 는 실질경제성장률,  $y$ 는 시작연도를 1로 하는 연도를 나타내는 추세 변수,  $e$ 는 오차항이다. 그리고 아래 첨자를 포함한  $\beta$ 는 각각의 변수에 대한 계수를 나타낸다.

#### 나) 신고분

다음으로 신고분 세수의 설명변수를 생각해보자. 신고분 세수는 법인의 과세표준에 의존하므로 법인의 소득(과세표준)에 대한 대리 변수로 경상 GDP를 사용한다. 법인세 납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의 법인실적에 영향을 받지만 이미 납부된 세액은 제외되는 과정에서 전전연도의 법인실적도 세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전년도와 전전연도의 경상 GDP를 사용한다. 실질성장률도 법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도와 전전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세율도 법인세 수 추계를 위한 변수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구간, 세율 등 세율 구조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해당 수치를 모두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개·비공개·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이 구분된 경우에는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공개법인의 세

5)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자율과 원천징수세율이 사용되지 않았다.

율을 사용한다. 세율 구조에 대한 변수로는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직전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끝나는 값(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는 ‘구간’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였다. 세율과 구간도 GDP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전년도와 전전연도의 변수를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세율 구조가 1982년과 1990년에 크게 변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1984년 이후 신고분 세수에 대해서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추정된 결과는 1990년도의 세계개편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당 변수만을 사용한다. 연도에 대한 더미를 사용한 추정식에서 GDP의 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연도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추정 수식은 다음과 같다.

$$\log(T_c) = \beta_0 + \beta_1 \log(GDP) + \beta_2 g + \beta_3 t + \beta_4 \log(br) + \beta_5 d + e \quad (2)$$

여기서  $T_c$ 는 산출세액,  $t$ 는 법인세 최고세율,  $br$ 은 구간,  $d$ 는 특정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나머지는 앞의 가정과 동일하다.

## 2) 추정결과

다음으로 추정결과를 살펴보자(<표 II-4>, <표 II-5>참조).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모든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추정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만을 사용한 두 가지 추정을 시도하였다. 먼저 D-W 통계량을 보자. 표본의 수가 21일 때 5% 유의수준에서 하한과 상한은  $k=6$ 일 때 0.829와 1.964,  $k=7$ 일 때 0.732와 2.124,  $k=10$ 일 때 0.461과 2.633으로 나타났다. 관련 변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신고분 세수( $k=10$ )에 대한 통계량이 1.555이므로 오차항이 자기상관(AR) 형태를 갖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가 없다<sup>6)</sup>. 관련 변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원천분 세수( $k=6$ )에 대한 통계량은 2.30이

6)  $k$ 는 설명변수의 숫자를 의미

므로 오차항이 AR 형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유의한 변수만을 사용한 경우도 D-W 통계량이 1.56과 2.126으로 앞의 경우와 동일한 결론을 갖는다. 즉, 원천분 세수에 대한 추정식은 오차항이 AR 형태를 갖지 않는 반면 신고분 세수는 오차항이 AR 형태를 갖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해당 값을 성명재(1995)와 비교하면 신고분의 경우는 다소 작게, 원천분의 경우는 다소 크게 나타났다.

<표 II-4> SUR 추정결과

		신고분 세수		원천분 세수	
		계수	t 값	계수	t 값
상수		-7.691	-7.283	-10.747	-4.315
log(GDP)	당해연도			1.479	6.083
	전년도	4.104	2.534		
	전전년도	-2.902	-1.719		
실질성장률	당해연도			-0.014	-2.534
	전년도	0.013	0.675		
	전전년도	0.043	2.602		
최고세율	전년도	5.765	2.812		
	전전년도	5.783	2.538		
구간	전년도	0.041	0.322		
	전전년도	-0.153	-1.251		
연도 1990		-0.418	-3.312		
이자율				0.027	4.302
원천징수세율				2.749	4.057
시간추세				0.089	2.576
D-W 통계량		1.555(n=21, k=10)		2.302(n=21, k=6)	
R <sup>2</sup> (조정 R <sup>2</sup> )		0.995 (0.992)			
MMSE		0.000144			

주 : 1) 자료기간은 1978~99년도임.

2) D-W 통계량의 ( ) 안의 수치는 각각 표본 수와 설명변수 수를 나타냄.

<표 II-5> SUR 추정결과 (유의한 변수)

		신고분 세수		원천분 세수	
		계수	t 값	계수	t 값
상수		-7.604	-8.880	-11.503	-4.650
log(GDP)	당해연도	5.199	7.997	1.553	6.438
	전년도 전전연도	-4.056	-6.590		
실질성장률	당해연도	0.032	3.415	-0.014	-2.765
	전년도				
최고세율	전년도	6.447	3.569		
	전전연도	4.044	2.199		
연도 1990		-0.418	-4.304		
이자율				0.028	4.702
원천징수세율				2.356	3.828
시간추세				0.081	2.354
D-W 통계량		1.561(n=21, k=7)		2.126(n=21, k=6)	
R <sup>2</sup> (조정 R <sup>2</sup> )		0.995 (0.992)			
MMSE		0.000164			

주 : 1) 자료기간은 1978~99년도임.

2) D-W 통계량의 ( ) 안의 수치는 각각 표본 수와 설명변수 수를 나타냄.

설명력을 나타내는 R<sup>2</sup> 또는 조정 R<sup>2</sup>의 값은 각각 0.995와 0.992로 성명재(1995)의 경우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설명변수 및 표본의 시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모형 자체가 설명력이 더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본 내 추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MMSE(최소 자승평균값) 수치는 0.000144와 0.000164로 나타났다<sup>7)</sup>.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포함한 추정방식이 더 우월한

7)  $MMSE = \sum \left( \frac{y_t - \hat{y}_t}{y_t} \right)^2 / T$ ,  $y$  는 실제값이며,  $\hat{y}$  는 추정값이다.

것으로 나타나므로 MMSE를 추정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명재(1995)의 경우 해당 값이 15~1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sup>8)</sup>.

설명력, D-W 통계량, MMSE 수치에 있어서 두 개의 추정결과가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어느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세수를 예측하던 세수 전망치는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유의한 변수를 기준으로 추정결과를 설명한다.

추정 결과를 보면 GDP에 대한 계수는 5.199과 -4.056이다. 따라서 전년도 GDP의 증가는 법인세수를 증가시키지만 전전연도의 GDP는 법인세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는 법인세 납부에 있어서 기납부된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t시점에서의 GDP 증가는 t시점의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반면 t+1시점에서는 세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전체적으로 세수의 탄력성은 약 1.143(5.199-4.056)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GDP가 1% 증가하면 법인세수는 2개 연도에 걸쳐 약 1.1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8년도의 GDP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1999년도의 GDP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1999년도에 비해 2000년도의 세수가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고 세율에 대한 계수는 6.447과 4.044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고 세율을 높일 경우 세수의 증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세율이 시작하는 구간에 대한 계수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실질성장률의 경우 전전연도의 성장률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는 0.032이다. 직전연도의 성장률은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전연도 성장률만이 유의하

8)  $R^2$ 의 값을 감안할 경우 실제값과 추정값의 차이를 실제값으로 나눌 경우 그 값은 평균적으로 0.005가 된다. 따라서 이를 제공하여 더한 값은 1보다 훨씬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반면 성명재(1995)의 MMSE 값은 어떻게 구한 것인지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다는 결과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직전연도의 GDP에 대한 계수가 양(+)이고, 전전연도의 GDP에 대한 계수가 음(-)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천분의 경우 GDP에 대한 계수는 1.553으로 나타나 GDP에 대한 원천징수 세수의 탄력성이 신고분 세수의 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상 GDP의 규모가 커질 때 법인의 저축이 GDP 성장률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분과 원천분 세수의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자의 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앞에서 법인세 신고분 세수의 탄력성이 약 1.143이므로 경상 GDP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의 탄력성은 약 1.348로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000년도의 GDP 증가가 1%라면 2000년도 원천분 세수가 1.553%, 2001년 신고분 세수가 5.199% 증가하는 반면 2002년도 신고분 세수는 -4.056%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성장률도 원천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수가 -0.014이므로 실질성장률이 높을 때 법인에게서는 저축의 규모를 줄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질성장률이 높을 때 법인에게서는 다양한 투자기회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경상 GDP 성장률과 함께 고려하여 생각하면 실질성장률이 낮고 경상성장률이 높을 때 법인은 저축의 규모를 확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상 GDP가 증가할 때 원천분 세수의 탄력성은 1.553보다 작은 값이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유사한 경우 세수의 탄력성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자율과 원천징수세율의 계수는 각각 0.028, 2.356으로 나타나 이자율과 원천징수세율이 높아질 때 원천분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변수를 백분율로 사용할 경우 해당 값이 2.8 수준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높이는 것과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이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율에 세율을 곱한 것이므로 양자가 유사한 값을 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1%로 1%p 높이고, 원천분 세수를 7조 원이라고 하면 원천분 세수는 7조 1,669억 원이 되어 약 1,669억 원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유사한 값을 갖는다.

시간적 추세도 그 값이 0.081로 나타나 법인의 저축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추정된 법인세수의 정확도를 고려해보자. 일반적으로 추정방법의 정확도는 표본내(in-sample) 예측과 표본외(out-of-sample)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앞의 표에서 보듯이 표본내 예측의 기준인 MMSE의 수치는 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추정의 본질이 기존의 결과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입예산 자료와 추정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특히 2000년도의 세수 전망은 2000년도의 법인세 세입 추세를 반영하여 원래 예산전망을 수정한 수치이므로 상당한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본 연구의 세수 전망과 세입 예산의 법인세수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신고분은 낮게, 원천분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원천분은 약 7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치는 약 8조 4천억 원으로 약 9천억 원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신고분은 약 2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전망치는 약 8조 4천억 원으로 약 6조 2천억 원의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수가 약 10조 7천억 원으로 원래 예산의 법인세수 전망수치인 약 11조 4천억 원과 유사하다. 2001년 세입예산과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도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비해 약 3조 5천억 원 정도 낮게 추정되고 있다. 이러

9) 원래 예산에 따르면 법인세수는 11조 3,621억 원이었다.

한 결과는 SUR 모형을 사용하여 원천분과 신고분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수를 추정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방식을 활용하여 법인세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한다<sup>10)</sup>.

<표 II-6> 추정값 비교

(단위 : 10억 원)

		신고분	원천분	합 계
2000	진망치	8,397	7,452	15,849
	추정치	2,216	8,442	10,658
2001	예 산	11,312	7,627	18,939
	추정치	4,616	10,859	15,475

다. 법인세 납부방식

1) 기본 모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 징수세수는 원천분과 신고분으로 구분되며 추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신고분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법인세는 원천징수, 중간예납, 수시부과, 정산납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1/2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text{산출세액}(t-1) - \text{원천징수}(t-1)]/2$ 이라 할 수 있다. 정산납부의 경우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사업연도의 수시부과, 중간예납 및 원

10) 추정결과는 신고분의 편차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 세수의 편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연도  $t$ 시점에서 법인세수는 원천분( $t$ ), 정산납부( $t$ ), 중간예납( $t$ ), 수시부과( $t$ )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의 결산시점을 보면 12월 결산법인이 95% 정도이다. 따라서 법인은 귀속연도가 아닌 다음 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정산납부( $t$ ), 중간예납( $t$ )은 사실상 전년도 사업실적이 기준이 된다. 또한 중간예납( $t$ )의 경우 직전연도가 기준이 되므로 전년도가 아닌 2개 연도 이전의 산출세액과 원천징수도 신고분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산납부( $t$ )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산출세액( $t-1$ )-[원천징수( $t-1$ )+중간예납( $t-1$ )]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 $t$ )은 [산출세액( $t-1$ )-원천징수( $t-1$ )]/2이므로 중간예납( $t-1$ )은 [산출세액( $t-2$ )-원천징수( $t-2$ )]/2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산출세액의 중간예납( $t-1$ )에 대입하면 정산납부( $t$ )는 산출세액( $t-1$ )-산출세액( $t-2$ )/2 -원천징수( $t-1$ )+원천징수( $t-2$ )/2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수시과세 및 감면세액을 제외할 경우  $t$ 시점의 법인세 세수는 원천분, 정산납부, 중간예납을 합한 것이 된다. 표에 따르면 원천분은 단순하지만 신고분 세수는  $3 \times$ 산출세액( $t-1$ )/2 -  $3 \times$ 원천징수( $t-1$ )/2 - 산출세액( $t-2$ )/2 + 원천징수( $t-2$ )/2의 복잡한 형태가 된다. 또한 수시과세 및 감면 등 기타 세수도 포함하면 더 복잡한 수식이 된다.

<표 II-7> 결산 시점별 법인 수

(단위 : 개, %)

	합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1991	90,553	83,826 (92.6)	1,866	2,238	786
1992	102,136	95,453 (93.5)	1,842	2,190	827
1993	112,262	105,366 (93.9)	1,956	2,282	840
1994	125,413	118,409 (94.4)	1,928	2,337	807
1995	142,084	135,165 (95.1)	1,982	2,388	802
1996	160,071	152,776 (95.4)	2,108	2,484	912
1997	179,316	172,099 (96.0)	2,087	2,466	798
1998	181,835	174,280 (95.8)	2,229	2,382	800

주 : ( )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8> 법인세 징수와 시점

원천분(t)		과세표준(t)×이자율(t)×원천징수세율(t)
신고분(t)	정산납부	$\begin{aligned} & \text{산출세액}(t-1) - [\text{원천징수}(t-1) + \text{중간예납}(t-1)] \\ & = \text{산출세액}(t-1) - \text{산출세액}(t-2)/2 \\ & \quad - \text{원천징수}(t-1) + \text{원천징수}(t-2)/2 \end{aligned}$
	중간예납	$[\text{산출세액}(t-1) - \text{원천징수}(t-1)]/2$

주 : 감면 및 수시과세는 제외함.  
 ( ) 안은 시점을 나타냄.

2) 원천분

<표 II-8>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법인세는 원천분과 신고분으로 구성되며, 신고분은 사실상 산출세액과 원천분 세수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원천분 세수를 추정하여 보자<sup>1)</sup>.

추정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원천분과 신고분에 대하여 SUR 모형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이 이전보다 큰 0.999이며, D-W 통계량도 2.311 커졌고, MMSE도 0.000115로 이전보다 작아졌다. 결국 원천분 세수는 SUR 모형을 사용하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추정할 때 모든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

개별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GDP에 대한 계수가 1.471로 이전보다 다소 작은 값으로 나타난 반면 실질성장률의 계수가 -0.021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경상성장률이 높고, 실질성장률이 낮은 경우 법인의 저축 규모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경제가 물가상승률이 낮고, 실질성장률도 낮은 안정적 성장을 계속한다면 원천분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자율 및 이자소득세율에 대한 계수는 앞의 원천분 추정 결과와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렇게 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00년은 약 8조 4,253억 원, 2001년은 약 11조 4,72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II-9> 원천분 추정결과(OLS)

	상수	log(GDP)	이자율	이자소득세율	실질성장률	연도
계수	-13.902	1.471	0.023	0.029	-0.021	0.085
t 값	-3.860	5.119	2.949	3.572	-2.855	2.090
기타	$r^2$ : 0.999 (0.998), D-W : 2.311, MMSE = 0.000115					
전망치	2000년 : 8조 4,253억 원, 2001년 : 11조 4,724억 원					

주 : 1. 이전과 동일하게 1979~1999년도 자료를 사용함.

2.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11) 이전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표본의 기간도 동일하게 하였다. 반면 추정방법은 OLS를 사용하였다.

## 3) 사업연도소득

다음으로 법인세의 세액 계산 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을 추정하여 보자.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다수의 단계에 걸쳐 세액을 추정하므로 예측치와 실제치가 차이가 나는 단계를 포착하기가 쉽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998년도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변화가 GDP와 사업연도소득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단계별 추정방식이 유리하다.

먼저 법인세에 대한 모형을 살펴보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실제 과세가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특별부가세가 있지만 각 사업연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안정적인 추정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추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수입에는 매출액, 영업외 수익, 특별수익이 포함된다. 반면 비용은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용,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이 있다. 매출액, 매출원가 등은 GDP의 영향을 받으며 영업외수익이나 손실은 이자지급이 대부분이므로 이자율, 부채비율 등이 변수가 될 것이다. 환차손익이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무시하기로 한다. 세법에서는 이 밖에도 대손충당금, 기부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추정에서 제외한다. 대손충당금은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질성장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도에 대한 더미변수와 실질성장률을 변수로 사용한다.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의 사업연도소득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실질성장률, 이자율, 외환위기 연도인 1997년과 1998년 더미 등은 유의하지 않고 상수와 당해 연도의 GDP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0>, <표 II-11>참조)<sup>12)</sup>. 이에 따르면 GDP에 대한 계

수는 1.236으로 법인의 사업연도소득의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즉, GDP가 1% 증가할 때 법인의 소득은 1.236% 증가한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전체 부가가치(GDP)에서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1999년도와 2000년도 법인소득을 추정하면 약 43조 2,424억 원과 48조 1,587억 원이 된다. 1997년과 1998년도 법인소득이 약 33조 3천억 원, 33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업연도 소득이 10~15조 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0> 사업연도소득 추정결과 1 (OLS)

	상수	log(GDP)
계수	- 6.052	1.236
t 값	-15.794	43.656
기타	$r^2$ : 0.999 (0.987), D-W : 1.713, MMSE = 0.000509	
전망치	1999년 : 43조 2,424억 원, 2000년 : 48조 1,587억 원	

주 : 1. 이전과 동일하게 1979~1999년도 자료를 사용함.  
2.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표 II-11> 사업연도소득 추정결과 2 (OLS)

	상수	log(GDP)	이자율	실질성장률	1997, 1998년 더미	연도
계수	-5.165	1.152	-0.000	0.001	-0.259	0.018
t 값	-2.192	5.034	-0.031	0.081	-1.125	0.408
기타	$r^2$ : 0.997 (0.988), D-W : 1.882, MMSE = 0.000480					

주 : 1.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함.  
2.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12) D-W 검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오차항이 AR 형태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손금

법인의 과세표준(TI)은 사업연도소득에서 5년 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가 제외된 금액이 된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개별적으로 추정하기가 힘들고, 추정의 실익도 크지 않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만 추정하기로 한다. 이월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에 영향을 받으며 이전 연도의 결손은 해당 연도의 GDP, 이자율, 실질성장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추정을 하기로 하자.

결손금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예상과는 달리 이자율과 실질성장률에 대한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에 대한 계수는 당해 연도의 경우 -4.835, 전년도의 경우 5.941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정결과는  $-4.835 \times [\log(\text{GDP}/\text{GDP}_{-1})] + 1.106 \times \ln(\text{GDP}_{-1})$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경상성장률이 높은 연도에 결손금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예상과 동일하다. 그리고 전년도의 GDP의 계수가 양수라는 점은 결손금이 1년의 시차를 두면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증가하며 탄력성은 약 1.106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1999년도의 결손금을 예측한 결과는 17조 3,756억 원이다.

<표 II-12> 결손금 추정결과 1 (OLS)

	상수	log(GDP)	log(GDP <sub>-1</sub> )
계수	-4.453	-4.835	5.941
t 값	-4.464	-4.262	5.477
기타	$r^2 : 0.999 (0.983), D-W : 1.738, MMSE = 0.001008$		
전망치	1999년 : 17조 3,756억 원		

주 : 1.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함.

2.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lt;표 II-13&gt; 결손금 추정결과 2 (OLS)

	상수	log(GDP)	log(GDP-1)	이자율	실질성장률	연도
계수	-1.720	-4.520	5.394	-0.019	0.006	0.041
t 값	-0.578	-2.408	3.122	-0.716	0.229	0.747
기타	$r^2 : 0.997 (0.986)$ , D-W : 1.896, MMSE = 0.000804					

- 주 : 1.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함.  
 2.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3.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의 경우 이전 5개 연도의 결손을 이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의 설명변수는 이전 5개 연도의 결손 규모가 된다. 그러나 추정결과를 보면 결손금 중에서는 전전연도의 결손금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수, 전전연도 결손금, 연도 등 유의한 변수만을 대상으로 다시 추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월결손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전연도의 결손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은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전연도와 전전연도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sup>13)</sup>. 또한 직전연도와 전전연도만을 설명변수로 추정한 결과치가 D-W 통계량이 작은 수치여서 오차항이 자기상관을 갖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선택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직전연도의 계수가 0.390, 전전연도의 계수가 0.488로 나타나 결손금의 탄력성은 0.878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올해 결손금이 1% 증가하면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이 0.390% 증가하고, 그 다음연도의 이월결손금이 0.488%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4)</sup>. 결손금의 탄력성이 전체적으로 1보다 작은 것은 2년 이상

13) 상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해당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된 결손금이 추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손실이나 법인의 파산 등으로 결손금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추정하면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각각 5조 2,155억 원, 5조 9,302억 원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이월결손금이 3조 510억 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이월결손금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월결손금과 앞에서 추정한 법인의 소득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해보면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38조 269억 원과 42조 2,285억 원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 과세표준이 약 30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999년도의 이월결손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하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14> 이월결손금 추정결과 1 (OLS)

	Loss-1	Loss-2
계수	0.390	0.488
t 값	2.441	2.986
기 타	$r^2$ : 0.998 (0.973), D-W : 1.632, MMSE = 0.000763	
전망치	1999년 이월결손금 : 5조 2,155억 원, 2000년도 이월결손금 : 5조 9,302억 원 1999년 과세표준 : 38조 269억 원, 2000년도 과세표준 : 42조 2,285억 원	

- 주 : 1. 변수명 Loss는 결손금이며 자연대수값을 사용함. 첨자는 이전연도를 나타냄  
 2.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함. 이월결손 연도가 2개 연도이므로 표본 수가 25개로 축소되었고, D-W 통계량이 최초로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시점을 잡는 과정에서 표본 수가 다시 22개로 축소됨.  
 3.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14) 전년도와 전전연도의 계수는 표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추정에서 전년도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수의 신뢰도는 t값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lt;표 II-15&gt; 이월결손금 추정결과 2 (OLS)

	상수	Loss-2	연도
계수	2.957	0.436	0.095
t 값	4.193	3.697	3.214
기타	$r^2 : 0.998 (0.978)$ , D-W : 1.661, MMSE = 0.000899		

- 주 : 1. 변수명 Loss는 결손금이며 자연대수값을 사용함. 첨자는 이전연도를 나타냄.  
 2.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함. 이월결손 연도가 2개 연도이므로 표본수가 25개로 축소됨.  
 3.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lt;표 II-16&gt; 이월결손금 추정결과 3 (OLS)

	상수	Loss-1	Loss-2	Loss-3	Loss-4	Loss-5	1998년 더미	연도
계수	2.860	0.220	0.544	-0.019	-0.025	-0.118	-0.316	0.118
t 값	2.822	1.298	2.692	-1.039	-0.152	-0.784	-1.344	3.015
기타	$r^2 : 0.992 (0.985)$ , D-W : 2.818, MMSE = 0.000461							

- 주 : 1. 변수명 Loss는 결손금이며 자연대수값을 사용함. 첨자는 이전연도를 나타냄.  
 2.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함. 이월결손 연도가 5개 연도이므로 표본수가 22개로 축소됨.  
 3.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 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므로 현재의 이중세율구조를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생각해보자. 먼저 법인수를  $N$ 이라 하고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을  $TI_i$ ,  $i$ 는 기업을 나타내는 첨자라 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은  $\sum_i (d_0 TI_i t_l + d_1 TI_i t_h)$ 가 된다. 여기서  $d_0$ 와

$d_1$ 은 각각 낮은 세율 및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며,  $t_l$ 과  $t_h$ 는 낮은 세율 및 높은 세율을 의미한다.

위 식은  $\alpha t_l + \beta t_h$ 로 표시할 수 있고, 연도별 개별법인에 대한 분포가 있으면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별법인에 대한 자료(미시자료)는 구할 수 없으므로 거시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관련 변수는 과세표준, 낮은 세율, 높은 세율, 높은 세율이 시작되는 구간 등이다. 앞의 표에 나타난 1998년도 자료를 보면 전체 법인의 40.7%가 결손 기업이며, 12.5%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고 나머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세액을 보면 과세표준 1억 원을 초과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전체 세액의 9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낮은 세율의 변화는 세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 높은 세율과 상수항 및 시간추세를 변수로 삼아 산출세액을 추정하기로 한다.

표의 산출세액 추정결과를 보면 설명력도 높고, MMSE도 여타 추정의 경우보다 작은 값이어서 예측모형으로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D-W의 값이 1.157로 표본 수가 27이고, 설명변수의 수가 4일 때 5% 유의수준의 하한값인 1.162보다 작아 오차항이 자기상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sup>15)</sup>.

---

15) 상수항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한다.

&lt;표 II-17&gt; 산출세액 추정결과 1 (OLS)

	과세표준	최고세율	최고세율 시작구간	연도
계수	0.773	0.041	-0.098	0.046
t 값	18.412	3.583	-2.602	5.428
기타	$r^2 : 0.999 (0.997), D-W : 1.157, MMSE = 0.000114$			

- 주 : 1.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함.  
 2.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3. 상수항이 유의하지 않아 변수에서 제외함.

따라서 추정 모형의 오차항이 AR(1)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Y_t = X_t \beta + e_t, \quad e_t = \rho e_{t-1} + v_t \quad (3)$$

식 (3)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OLS 방식으로  $\beta$ 를 추정하여 오차항을 구한다. 추정된 오차항을 바탕으로  $\rho$ 를 추정한다. 다음에 추정된  $\rho$ 를 이용하여 P를 구성한다<sup>16)</sup>. 그리고 해당 P를 이용하여 X와 Y를 PX 및 PY로 변형한 다음 변형된 X, Y를 이용하여  $\beta$ 를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beta$ 와  $\rho$ 를 추정한다<sup>17)</sup>. 그러나 추정결과를 보면 D-W 통계량이 더 작은 값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본 수를 조정하여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16) P = \begin{bmatrix} \sqrt{1-\rho^2} & 0 & \dots & 0 & 0 \\ -\rho & 1 & \dots & 0 & 0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vdots \\ 0 & 0 & \dots & -\rho & 1 \end{bmatrix}$$

- 17) 이러한 방법은 처음 항 하나를 제외하면 Cochrane-Orcutt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표 II-18> 산출세액 추정결과 2

	과세표준	최고세율	최고세율 시작구간	연도
계수	0.759	0.048	-0.113	0.050
t 값	18.606	4.351	-3.111	6.289
기타	$\rho : 0.3419, r^2 : 0.999 (0.997), D-W : 0.086, MMSE : 0.000087$			

- 주 : 1.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함.  
 2.  $r^2$ 의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3. 상수항은 유의하지 않아 변수에서 제외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차분한 값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시간추세 외에 세율이나 구간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의한 변수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유일하게 유의한 변수는 과세표준이며 해당 계수는 0.92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 변할 때 산출세액은 0.923%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1999년과 2000년 산출세액을 추정한 값은 각각 9조 3,414억 원과 10조 2,90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II-19> 산출세액 추정결과 3 (OLS)

	$\log[\text{과세표준}(t) - \text{과세표준}(t-1)]$
계수	0.923
t 값	19.251
기타	$\rho : 0.3419, r^2 : 1.000 (0.906), D-W : 1.836, MMSE : 1.288$
전망치	1999년 산출세액 : 9조 3,414억 원, 2000년 과세표준 : 10조 2,902억 원

- 주 : 1.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차분한 값이 사용됨.  
 2.  $r^2$ 의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3. 상수항은 유의하지 않아 변수에서 제외함.

&lt;표 II-20&gt; 산출세액 추정결과 4 (OLS)

	과세표준	최고세율	최고세율 시작구간	연도
계수	0.915	0.013	0.007	0.002
t 값	13.977	1.157	0.176	0.110
기타	$r^2 : 0.988 (0.912)$ , D-W : 2.164, MMSE : 0.938			

주 : 1. 1972~1998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차분한 값이 사용됨.  
 2.  $r^2$ 의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3. 상수항은 유의하지 않아 변수에서 제외함.

## 6) 신고분 세수

마지막으로 징수세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신고분 세수와 산출세액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고분 세수는  $3 \times$ 산출세액 $(t-1)/2 - 3 \times$ 원천징수 $(t-1)/2 -$ 산출세액 $(t-2)/2 +$ 원천징수 $(t-2)/2$ 의 형태이며 여기에 수시과세 및 감면 등이 추가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_r(t) = [3T_c(t-1) - T_c(t-2)]/2 - [3T_w(t-1) - T_w(t-2)]/2 + T_k \quad (4)$$

여기서  $T_r$ ,  $T_w$ 는 각각 신고분과 원천분 세수이며,  $T_c$ 는 산출세액,  $T_k$ 는 수시과세, 감면 등 기타 세수이다. 그리고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T_r(t) + [3T_w(t-1) - T_w(t-2)]/2 = [3T_c(t-1) - T_c(t-2)]/2 + T_k \quad (5)$$

따라서 신고분과 원천분 세수로 구성된  $Y = T_r(t) + [3T_w(t-1) - T_w(t-2)]/2$ 는 산출세액  $T_X = [3T_c(t-1) - T_c(t-2)]$ 와 여타세수  $T_k$ 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면 등 기타 세수는 적절한 대리변수가 없지만 상수, 시간 추세가 설명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국세통계연보의 산출세액  $T_M$ 과 위식의 산출세액  $T_X$ 가 갖는 함수적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사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log(Y) = \beta_0 + \beta_1 \log(T_M) + \beta_2 year + e, \quad (6)$$

추정결과를 보면 산출세액( $T_M$ )의 계수는 0.339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추정한 신고분 세수는 2000년의 경우 7조 4,389억 원, 2001년은 8조 3,206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에 원천분 세수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정된 신고분의 세수는 원천분의 추정치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즉, 원천분의 추정치와 신고분의 추정치가 역으로 작용하여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방식을 따를 경우 원천분과 신고분의 합계가 신뢰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1> 신고분 세수 추정결과(OLS)

	상수	산출세액( $T_X$ )	연도
계수	5.407	0.339	0.115
t 값	5.301	2.662	5.096
기타	$r^2 : 0.998 (0.985), D-W : 1.212, MMSE : 0.000186$		

주 : 1. 원천분 세수의 자료가 가용한 1978~1999년 자료를 사용함. 시간 변수로 인하여 표본의 수가 21개임.  
 2.  $r^2$ 의 ( ) 안은 설명변수 수를 감안한  $r^2$ 임.

추정된 수치를 예산상의 수치와 비교하면 2000년의 경우 원천분은 약 8조 4천억 원으로 정부의 세수전망치인 7조 4천억 원에 비해 약 1조 원 정도 크게 나왔다. 반면 신고분은 전망치가 약 8조 4천억 원인 데 반하여 추정된 값은 약 7조 4천억 원으로 약 1조 원 낮은 수치를 보인다.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하면 정부의 전망치와 본 연구의 전망치의 차이는 거의 없다.

2001년의 경우 원천분은 1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데 반해 예산은 7조 6천억 원이어서 추정된 수치가 약 4조 원 가량 높다. 그리고 신고분은 예산상으로는 11조 3천억 원인 데 반하여 추정치는 약 8조 3천억 원으로 약 3조 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추정된 수치가 정부 전망치보다 약 7천억 원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 즉 신고분, 원천분 각각과 전망치의 차이가 축소되는 것은 신고분 세수의 추정에 있어서 원천분이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표 II-22> 추정값 비교

(단위 : 10억원)

		신고분	원천분	합계
2000	전망치	8,397	7,452	15,849
	추정치	7,439	8,425	15,864
2001	예산	11,312	7,627	18,939
	추정치	8,321	11,472	19,793

#### 4. 요약 및 결론

법인세 세수는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크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구조조정 등 수익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법인세

의 정확한 세수추정이 어렵다. 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2000년 당초 예산은 11조 3,621억 원이었으나 수정된 전망치는 15조 8,493억 원으로 편차가 4조 5천억 원 수준에 이르는 등 세수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최근 급격한 경기 변동에도 있지만 원천분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법인세 세수 구조의 변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법인세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설정하여 세수추계를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신고분과 원천분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단계 추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다단계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1998년도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변화가 GDP와 사업연도소득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단계별 추정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요한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의 사업연도소득은 GDP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계수 1.236).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법의 변화가 없다면 법인세의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법인세수가 GDP에서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28%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손금의 경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결손금도 커지지만 경상성장률이 높은 연도에는 결손금이 추세보다 작게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연도에는 결손금이 추세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결손금의 경우 이전 5개 연도의 결손을 이월할 수 있지만 추정결과는 직전 2개 연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보면 직전연도의 계수가 0.390, 그 이전연도가 0.488이어서 이월결손금의 결손금에 대한 전체적인 탄력성은 0.878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금의 일부만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산출세액 추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대한 계수가 0.926으로 과세표준이 변할 때 산출세액이 거의 1:1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분 세수를 추정한 결과는 GDP에 대한 계수가 1.471로 나타났고, 실질성장률에 대한 계수가 -0.021로 나타남으로써 경상성장률이 높고, 실질성장률이 낮은 경우 원천분 세수의 증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계속하면 원천분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추정된 수치를 예산상의 수치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원천분이 크고, 신고분은 낮게 나왔으며 양자를 합한 전체적인 법인세수는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 방법이 거시자료에만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확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취약점도 많다. 우선 비과세 및 감면 등을 추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해당 요소들이 너무 재량적이어서 정확한 추정이 사실상 어렵고, 정확히 반영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향후 비과세 및 감면 문제와 더불어 기존 추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검증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미시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Ⅲ. 관세 세수추계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관세는 중요한 산업 및 무역정책 수단인 동시에, 세수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세수는 2000년 예산기준으로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하여 전체 국세 세수의 6%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하락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관세가 국세에서 점하는 비중은 상당기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1>에서 보듯이 국세 중에서 관세<sup>18)</sup>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16.5%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7.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94년 이후 1997년까지는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하여 1997년에는 8.17%에 달하였다. 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수입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관세징수액이 전년도에 5조 8천억 원 규모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6%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경제회복과 함께 징수액은 4조 7천억 원에 달하였고, 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0%로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세수 중 관세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방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총국가수입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1997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6.13%로 회

18) 본절에서는 환급분을 제외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 절부터는 환급분을 제외하지 않은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원국 중 가장 높다<sup>19)</sup>. 북미와 서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한 대부분 회원국의 국세 중 관세비중은 1% 내외에 그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국가수입 중 관세비중이 3%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헝가리(4.84%)와 멕시코(3.27%), 폴란드(3.84%) 등 3개국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세수 중 관세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가운데,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관세율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기 때문이다.

<표 III-1> 연도별 관세 및 국세 세수의 변화

(단위 : 10억원)

	관 세(A)	국 세(B)	관세비중(A/B)
1981	891	7,258	12.27
1982	1,013	8,396	12.06
1983	1,463	10,051	14.56
1984	1,594	10,900	14.62
1985	1,566	11,876	13.19
1986	1,943	13,606	14.28
1987	2,696	16,344	16.50
1988	2,574	19,484	13.21
1989	2,118	21,234	9.97
1990	2,765	26,847	10.30
1991	3,435	30,320	11.33
1992	3,153	35,218	8.95
1993	2,886	39,261	7.35
1994	3,449	47,262	7.30
1995	4,633	56,775	8.16
1996	5,310	64,960	8.17
1997	5,798	69,928	8.29
1998	3,836	67,798	5.66
1999	4,687	75,658	6.20

주 : 관세징수액은 관세환급금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예산처, 『주요경제지표 동향』.

19) OECD, *Revenue Statistics*, 1999.

따라서 관세에 관한 정확한 세수추계는 합리적 관세정책의 수립과 함께 조세, 재정정책의 기본 틀을 정하고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기존의 관세 세수추계는 종합적 세수추계의 일부로서 다루어져 수입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기존의 추계방법<sup>20)</sup>은 단일한 관세세수함수를 상정하여 관세징수액 총액을 피설명 변수로 하고 국민(내)총생산, 수입총액, 시간추세 및 대표적 관세율(실적관세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수입품의 성격이나 가공도별로 상이한 관세율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같은 대표적 관세율하에서도 품목별 관세율의 구조에 따라 세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다. 둘째, 단일 함수에 의한 세수추계방식은 수입의 구성, 예컨대 가공단계별(원료, 중간재, 완제품) 또는 산업별 수입이 각종 경제변수들에 관하여 반응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 나.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 세수추계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품목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세 가지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각 품목군별로 관세세수함수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1998년에 개정된 「수출입품목동향 분류체계」에 따라 수입품을 원자재·자본재·소비재의 3대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군별로 1990~1999년 사이에 발생한 관세세수의 변화추이, 수입동향, 관세율 변화를 개관한다. 그 후에 기존의 연구와 같은 단일 함수추정, 품목군별 세수함수의 분리추정, 품목군별 세수함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SUR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20) 성명재·현진권(1994), 성명재(1995)

관세세수에 대한 추계는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모형이나 수입합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행하고 있는 수입품목군별 세수합수 추정방식은 추후의 거시경제모형이나 수입합수에 입각한 연구가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2. 품목군별 관세세수 동향

### 가. 가공도별 수입분류

이 연구를 위해 수입품목들을 1998년의 「수출입품목동향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약 1만여 개에 달하는 HS-10단위 수입품들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세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품목군별 세수, 수입액, 실적세율의 계열을 마련하였다. 세수합수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이 분류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전산형태 자료의 구축 가능성과 HS 분류의 일관성 유지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일단 1990년부터 1999년까지만 시계열의 구축이 가능했다.

3대 품목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그 구성을 살펴보면(<표 III-2> 참조), 소비재는 곡물과 주로 음식료품으로 구성된 직접소비재 그리고 전자제품 등의 내구소비재 및 의류 등의 비내구소비재로 구성되며, 원자재에는 연료, 광물 및 경공업원료의 기초원료와 기초중간재에 해당하는 유지·섬유·화학품·철강재·비철금속과 기타 제품이 있으며 자본재는 기계류·정밀·전기·전자기기·수송장비 및 기타로 구성된다<sup>21)</sup>.

21) 1998년 당시 HS 10단위 품목을 기준할 때 소비재에는 2,597개의 품목이 있으며 이는 다시 곡물(83개 품목), 직접소비재(841개 품목), 내구소비재(936개 품목), 비내구소비재(737개 품목)로 구성된다. 원

<표 III-2> 가공도별 수입품 분류표와 실행관세율(1999년)

(단위 : %)

소비재(7.9)		곡물(3.7), 직접소비재(21.2), 내구소비재(4.2), 비내구소비재(10.0)
원자재(4.8)	기초원료(3.4)	연료(3.8), 광물(1.2), 경공업원료(2.9)
	중간재 (6.6)	유지(5.1), 섬유류(8.9), 화공품(7.2), 철강재(5.8), 비철금속(4.7), 기타(6.5)
자본재(4.1)		기계류 및 정밀기기(6.9), 전기전자기기(2.8), 수송장비(3.7), 기타(4.5)

주 : 실행관세율은 수입액 가중평균치임, 관세징수액은 환급분을 제외하지 않은 액수임.

자료 : 재정경제부 전산자료, 관세연구소, 『수출입동향 품목분류』 1998.

나. 가공도별 세수동향(1990~1999년)

위에서 설명한 분류에 따라 품목군별 관세세수의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1990년대의 전체 관세세수의 추이를 먼저 살펴보자. 단, 이하의 서술에서는 환급분을 제외하지 않은 세수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 까닭은 품목군별 세수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HS 세번별 환급액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III-1]과 <표 III-3>에서 보듯이 1993년 이전까지는 약 1.8% 포인트(7.4%→5.6%)에 이르는 평균관세율 인하로 인하여 연평균 12%에 이르는 수입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세세수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감소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1993~1997년 사이에는 관세율 하락의 둔화<sup>22)</sup>와 함께 발생한 수입액의 급증(연평균 26%)으로 인하여, 관세세수는 1993년 3조 7,623억 원에서 1997년 7조 9,973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에는 수입액이 정체하고 실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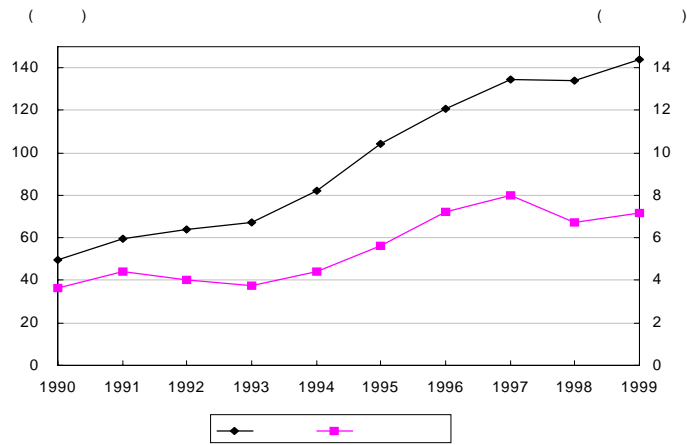
자재에는 4,615개 품목이 있는데 이는 기초원료(492개 품목)와 중간재(4,123개 품목)로 분류되고 자본재에는 1,216개 품목이 있다.

22) 실적세율은 5.6%에서 5.9%로 오히려 상승하였다.

세율이 하락(5.9%→4.0%)함에 따라 관세세수는 6조 7,345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경제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하여 관세세수는 7조 1,89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II-1] 수입액과 관세징수액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조원)



<표 III-3> 관세세수와 수입액 및 평균관세율의 변화(1990~1999년)

(단위 : 10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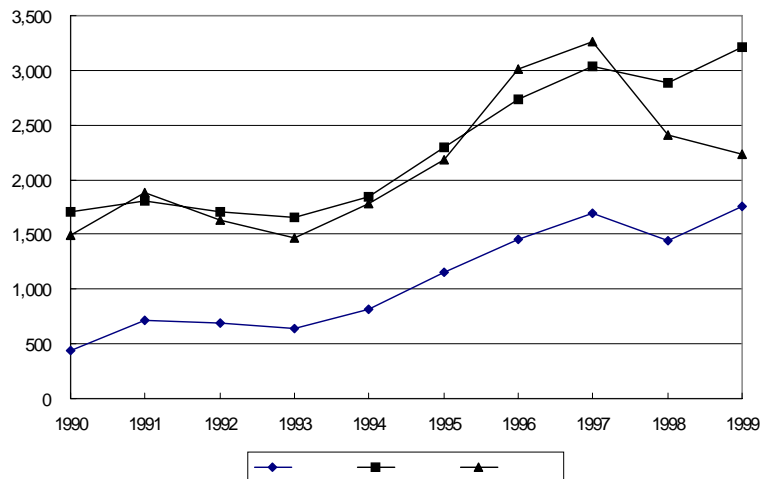
연도	수입액	관세율	관세징수액
1990	49,371.2	7.36	3,631.5
1991	59,731.7	7.38	4,409.2
1992	63,774.1	6.33	4,037.2
1993	67,190.1	5.60	3,762.3
1994	82,183.0	5.40	4,438.5
1995	104,498.0	5.40	5,646.5
1996	120,604.5	5.97	7,202.7
1997	134,625.9	5.94	7,997.3
1998	133,855.8	5.03	6,734.5
1999	143,845.6	5.00	7,189.1

주 : 관세율은 수입가중 평균세율임.  
 자료 : 관세청 전산자료

다음으로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품목군별로 관세세수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III-2] 참조), 전체세수에서 보았던 추세가 각 품목군에도 기본적인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품목군별로 변동의 크기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자본재 세수는 22.1% 감소하여 소비재(10.6% 감소), 원자재(8.5% 감소)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였다.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의 세수증가 시기에는 소비재 세수는 163.3%, 자본재 세수는 122.7% 증가하였으나 원자재 세수의 증가는 83.8%에 그쳤다. 1998년에는 자본재의 세수감소(전년 대비 26.1%)가 다른 품목군에 비해 두드러졌고, 1999년에는 소비재와 원자재 세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자본재 세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III-2] 품목군별 관세세수 변화(1990~1999년)

(단위 : 10억원)



이와 같이 품목군별로 관세세수의 추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은 품목군별 수입액 변화의 차이와 세율 변화의 차이 두 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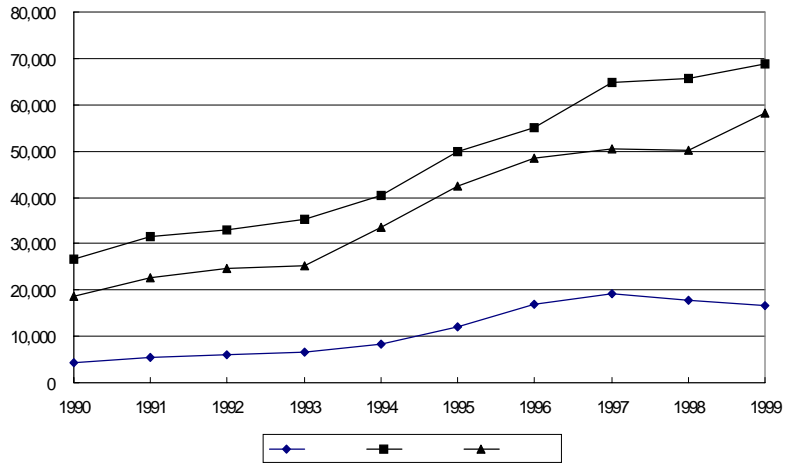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요인인 수입액의 동향을 살펴보면([그림 III-3] 참조),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나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 모두 수입액 증가의 속도는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의 순서였다. 소비재는 두 시기 각각 51.6%, 193.9% 증가하였고 자본재는 37.1%, 99.3% 증가한 반면, 원자재는 32.9%, 83.9%의 증가에 그쳤다. 1998년의 수입위축비율 역시 이 순서대로여서 소비재는 6.6%, 자본재는 0.6%가 감소하였고 원자재는 오히려 1.3%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관세율의 추이를 수입액 가중 실적관세율로 살펴보자([그림 III-3] 및 <표 III-4> 참조). 1990년에서 1993년까지의 기간동안, 소비재는 1991년에 크게 상승하였다가 1993년에는 9.86%로 199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원자재는 1990년 6.43%에서 1993년 4.69%로 인하되었다. 자본재는 8.06%에서 5.78%로 상당히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전반적 관세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도 품목군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원자재는 이 기간에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소비재는 9.86%에서 8.84%로 1포인트 가량 하락하고, 자본재는 5.78%에서 6.45%로 다소 상승하여 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경제위기 이후로도 원자재의 세율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소비재는 8.84%에서 10.51%로 증가하였고 자본재는 6.45%에서 3.82%로 하락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의 성장이나 위축에 따라 품목군별로 수입액이 반응하는 민감도가 서로 다르고 관세율의 추이도 품목군별로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품목군별 관세세수의 추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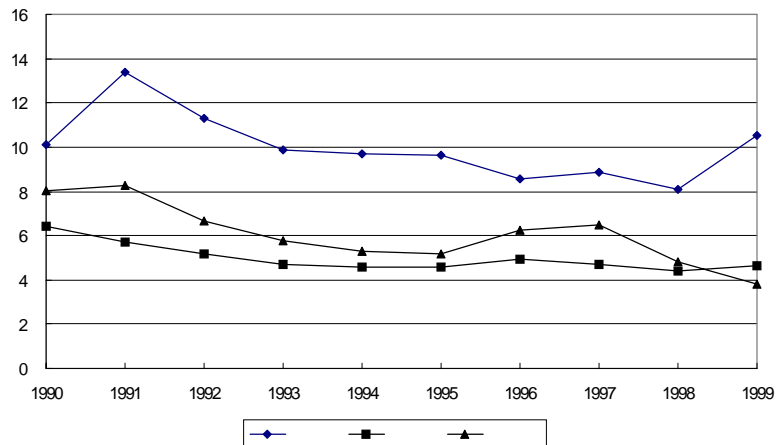
[그림 III-3] 품목군별 수입액 추이(1990~1999년)

(단위 : 10억원)



[그림 III-4] 수입 가중평균 관세율의 연도별 변화

(단위 : %)



〈표 III-4〉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수입액 가중평균  
실적 관세율 변화

(단위 : %)

	소 비 재	원 자 재	자 본 재	전 체
1990	10.08	6.43	8.06	7.36
1991	13.39	5.71	8.28	7.38
1992	11.30	5.17	6.64	6.33
1993	9.86	4.69	5.78	5.60
1994	9.72	4.56	5.32	5.40
1995	9.64	4.69	5.15	5.40
1996	8.56	4.95	6.23	5.97
1997	8.83	4.69	6.45	5.94
1998	8.07	4.38	4.80	5.03
1999	10.51	4.65	3.82	5.00

자료 : 관세청, 전산자료.

### 3. 추정모형의 설정

#### 가. 추정모형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추정되는 방정식 형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기존의 연구와 같이 관세세수를 통합하여 하나의 회귀식을 추정한다(이하 ‘집계 OLS’라고 함).

(추정식 1)

$$\text{집계 OLS : } \log(R) = \alpha + \beta_0 Z + \beta_1 \log(x) + \beta_2 (t) + \varepsilon \quad (7)$$

R은 총 관세세수, Z는 시간추세, x는 GDP, t는 대표세율이다<sup>23)</sup>.

23) 사전적 추정에서 환율도 설명변수로 도입되었으나 절대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낮아서 추정식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유형은 품목군별로 관세세수를 분리하여 추정한다. 단, 회귀식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이하 ‘분리 OLS’라 함).

(추정식 2)

$$\text{분리 OLS : } \log(R_1) = \alpha_1 + \beta_{10} Z + \beta_{11} \log(x) + \beta_{12} (t_1) + \varepsilon_1 \quad (8)$$

$$\log(R_2) = \alpha_2 + \beta_{20} Z + \beta_{21} \log(x) + \beta_{22} (t_2) + \varepsilon_2$$

$$\log(R_3) = \alpha_3 + \beta_{30} Z + \beta_{31} \log(x) + \beta_{32} (t_3) + \varepsilon_3$$

위식에서  $R_i$ 는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로 구분된 품목군별 세수이며,  $t_i$ 는 품목군별 대표세율을 의미한다.

셋째 유형은 둘째 유형과 동일하되 회귀식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모두 고려한 SUR이다(이하 ‘SUR’이라 함).

(추정식 3)

$$\text{SUR : } \log(R_1) = \alpha_1 + \beta_{10} Z + \beta_{11} \log(x) + \beta_{12} (t_1) + \varepsilon_1 \quad (9)$$

$$\log(R_2) = \alpha_2 + \beta_{20} Z + \beta_{21} \log(x) + \beta_{22} (t_2) + \varepsilon_2$$

$$\log(R_3) = \alpha_3 + \beta_{30} Z + \beta_{31} \log(x) + \beta_{32} (t_3) + \varepsilon_3$$

셋째 유형에서 회귀식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까닭은 관세세수를 결정하는 비체계적인 요인들(예컨대 수입성향의 일시적 증감, 세관 행정의 엄격성 등)의 작용이 동일한 연도에는 서로 다른 품목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SUR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IFGLS를 사용한다. 이 IFGLS로 얻어진 추정치는 최우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와 동일함이 알려져 있다.

위 추정식의 계수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beta_0$ (혹은  $\beta_{i0}$ )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해가 갈 때마다 세수가 전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를 보여준다(예컨대 계수가 0.01이라면 해마다 세수가

1% 증가함을 의미함).  $\beta_1$ (혹은  $\beta_{11}$ )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GDP의 1% 변화에 대해 세수가 몇 % 변화하는가를 보여준다. 즉, 세수의 소득탄력성이다(예컨대 계수가 1이라면 GDP의 1%변화에 대해 세수가 1%증가함을 의미함).  $\beta_2$ (혹은  $\beta_{12}$ )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세율의 1% 포인트 변화에 대해 세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보여준다(예컨대 계수가 0.1이면 세율 1% 포인트 상승이 세수를 10% 증대시킴을 의미함).  $\beta_3$ (혹은  $\beta_{13}$ )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

$$\beta_2 = \frac{1}{t} + \frac{\epsilon}{(100 + t)} \quad (10)$$

단,  $\epsilon$ 은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t$ 는 세율<sup>24)</sup>

따라서 수입수요의 탄력성이 0 이라면  $\beta_2$ 는 %로 표시한 세율의 역수가 되며 수입수요가 수입가격에 대해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율의 역수보다 작아질 것이다.

#### 나. 세수예측력 측정기준

추정식에 대해 다수의 대안들이 있을 때 그 중 세수를 가장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선택의 기준으로는 손실함수(Loss Function)가 많이 이용된다. 손실함수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와 추정식에 의해 예측된 값 사이의 오차가 의사결정 주체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는가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현시점에서 미래의 세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추정식의

24) 이 관계는 '세수 = 세율 × 수입가격 × 수입량' 즉,

$$R = \frac{t}{100} P Q (P(1 + \frac{t}{100}), Y), \quad (\text{단, } P \text{는 수입가격, } Q \text{는 수입 함수, } Y \text{는 소득}) \text{의 양변에 로그를 취한 후 } t \text{에 대해 미분하면 얻어진다.}$$

예측력을 측정하는 대안으로 과거의 실제 관측치와 추정식에 의한 추정치간의 오차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성명재·현진권(1994) 성명재(1995) 등에서 이용한 MSE(Mean Squared Error: 평균오차자승)와 MAD(Mean Absolute Deviation: 평균절대평가)를 이용한다. MSE와 MAD 모두 그 수치가 작을수록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MSE와 MAD는 어디까지나 과거실적과의 오차를 기준으로 예측력을 측정한 것이므로 경제변수가 변화하는 미래에서의 세수를 전망하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4. 추정결과

##### 가. 추정결과

관세징수액 및 수입액은 관세청이 제공한 전산자료를 사용하였다. 단, 관세징수액은 환급분을 제거하지 않은 액수이다. 그 까닭은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품목군별 세수계산의 기초가 되는 HS 세번별 환급액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품목군별로 분리하지 않은 관세세수함수에 대한 추정결과(즉, '집계 OLS')와 품목군별로 분리하여 세수함수를 추정하되 각 세수함수간의 상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결과(즉, '분리 OLS')를 비교 설명한 후, 세수함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SUR 모형의 추정결과를 설명한다.

##### 1) 집계 OLS와 분리 OLS의 추정결과 비교

<표 III-5>는 집계 OLS와 분리 OLS의 추정결과이다. 세수함수를 품목군별로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GDP에 대한 관세세수의 탄력성

이 품목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집계 OLS에서는 세수의 GDP에 대한 탄력성이 0.958로 나타났다. 분리 OLS 모형에서는 그 탄력성이 소비재 1.414, 원자재 0.739, 자본재 1.239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관세세수 함수에서 GDP에 대한 탄력성이 수입수요함수의 소득탄력성을 반영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수입이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의 순으로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뜻하며 이러한 결과는 직관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5> 관세세수함수 추정결과

	집계 OLS	분리 OLS			SUR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상수항	-7.562 (-3.740)	-14.982 (-1.695)	-5.043 (-1.403)	-12.143 (-3.822)	-14.707 (-2.239)	1.237 (0.350)	-11.967 (-2.179)
시간추세	0.0422 (2.715)	0.0106 (0.156)	0.0456 (1.894)	0.00252 (0.094)	0.0112 (0.214)	0.0679 (2.467)	-0.0396 (-0.904)
log(GDP)	0.958 (6.935)	1.414 (2.329)	0.739 (3.084)	1.239 (5.605)	1.398 (3.061)	0.354 (1.450)	1.283 (3.358)
실적 관세율	0.258 (12.512)	0.0617 (1.698)	0.283 (6.479)	0.194 (9.648)	0.0578 (12.518)	0.156 (10.052)	0.0958 (12.767)
	0.994 <0.990>	0.952 <0.928>	0.982 <0.973>	0.980 <0.970>	0.952 <0.928>	0.957 <0.936>	0.899 <0.848>
DW	2.437	0.907	2.253	2.082	0.930	1.500	0.965
MSE	0.000524	0.0106	0.00114	0.00146	0.0106	0.00283	0.00740
		0.00119			0.00547		
MAD	0.0193	0.0854	0.0311	0.0279	0.0844	0.0436	0.0716
		0.0286			0.0614		

주 : 1. 시간추세는 1990년=1, ..., 1999년=10임.

2. ( ) 안의 값은 t값임.

3. < > 안의 값은 조정된  $R^2$ .

실적관세율에 대한 계수 즉, 3절의 추정식에서의  $\beta_2$  혹은  $\beta_{2j}$ 도 품목군별 세수함수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집계 OLS에서는

0.258로 나타나고 있으나(이것은 실적관세율 1% 포인트의 상승이 관세세수를 약 26% 증대시킴을 의미함.) 분리 OLS에서는 소비재 0.0617, 원자재 0.283, 자본재는 0.194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식(10)에서 알 수 있듯이 품목군별 관세율 수준의 격차와 품목군별 수입의 가격탄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관세율의 변화가 수입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관세율 1% 포인트의 변화는 현행세율을  $t_c$ 라 할 때 관세세수에  $\frac{1}{t_c}$  만큼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1999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평균실적관세율은 각각 10.51%, 4.65%, 3.82% 인바, 그 역수들은 각각 0.10, 0.22, 0.26이며 추정된 계수들은 이 역수들에 어느 정도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함수가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율에 대한 계수는  $\frac{1}{t_c}$  보다 작아질 것이며, 탄력성이 클수록 더 큰 폭으로 작아질 것이다. 실제로 추정된 계수들은 소비재와 자본재의 경우 현행세율의 역수들보다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 자본재의 경우 세율의 계수와  $\frac{1}{t_c}$  사이의 격차가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다소 큰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회귀식이 현실에 대한 선형 근사(線形近似)이므로 생길 수 있는 오차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재 수입이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간 추세는 집계 OL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리 OLS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시계열자료이므로 회귀식의 교란항에서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차 자기상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DW 통계량을 보면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다. 자기상관 존재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추정에 사용된 관측값의 수효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 2) SUR 모형 추정결과

<표 III-5>의 마지막 세 列은 세수함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SUR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GDP에 대한 관세세수의 탄력성은 분리 OLS에서와 같이 품목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비재는 1.398, 자본재는 1.283로 나타나서 분리 OLS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원자재는 0.354로 분리 OLS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실적관세율에 대한 계수는 분리 OLS에서와 같이 품목군별 세수함수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계수는 각각 0.0578, 0.156, 0.0958이다. 소비재의 경우는 분리 OLS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원자재와 자본재의 계수는 분리 OLS에 비해 상당히 작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모든 품목군에서 1999년의  $\frac{1}{t_c}$  보다 계수가 작아서 이론적 고려와 일치한다.

시간추세의 계수는 소비재와 자본재에 대해서는 절대값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자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추세의 계수는 실제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수가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경제적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세수함수에서 고려되지 못한 설명변수들의 시계열적 움직임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나. 과거 실적에 기초한 세수예측력 비교

세 가지 모형을 MSE와 MAD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단순한 모형일수록 더 좋은 세수예측력을 보여준다. 즉, 단일 세수를 추정하는 집계 OLS 방식이 세수함수를 분리하여 추정하는 분리 OLS나 SUR 모형에 비하여 더 작은 MSE와 MAD 값을 가지고 또한, 세수함수를 분리하여 추정하되 개별적으로 추정한 분리 OLS 방식이 SUR 모형에 비해 더 작은 MSE와 MAD 값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세수함수를 품목군별로 분리추정하는 것이나 세수함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무용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MSE나 MAD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기본적으로 과거실적에 비추어 본 척도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시계열은 10년에 불과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수함수를 분리하지 않고 추정된 집계 OLS의 경우 관세인하 정책의 구조를 반영한 세수예측을 할 수 없다. 또한, 세수함수를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식들 중에서는 SUR 모형이 분리 OLS에 비해 세율에 대한 계수가 경제이론적 고려와 더 잘 부합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5. 관세 세수예측

이하에서는 위에서 추정된 함수를 이용하여 미래의 세수를 예측한다. 예측은 실적관세율 불변의 가정과 실적관세율 인하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행한다. 어느 경우에도 세수예측을 위해서는 세수함수에 사용된 GDP에 대한 예측치가 필요하다. 이 예측치는 한국조세연구원의 거시경제예측모형에 의한 잠정 전망치(2000년 12월 현재 예측치)를 사용하였다.

**<표 III-6> 경상GDP 예측치**

(단위 : 10억원)

	2001	2002	2003
GDP	555,092.8	599,971.2	651,476.9

우선, 실적관세율이 불변이라는 가정, 즉 1999년 현재의 관세율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세수함수의 계수를 이용한 관세세수 예측치는 <표 III-7>과 같다. 단, 이 예측치는 관세율이 1999년 수준

에 머물 것이라는 전제하에 구해진 것이다.

### <표 III- 7> 실적세율 불변가정하의 세수전망

(단위 : 10억원)

	집계 OLS	분리 OLS				SUR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합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합계
2001	9,053.1	2,327.0	4,009.5	2,615.8	8,952.4	2,310.2	3,923.1	2,560.8	8,794.1
2002	10,173.5	2,625.1	4,444.8	2,887.6	9,957.5	2,604.4	4,315.9	2,719.6	9,639.9
2003	11,492.2	2,980.8	4,944.1	3,205.9	11,130.8	2,955.2	4,755.8	2,905.3	10,616.2

고려한 모든 연도에서 집계 OLS, 분리 OLS, SUR의 순으로 세수를 크게 예측하였다. 단, 그 격차는 1999년의 경우 약 1천억 원(집계 OLS와 분리 OLS) 내지 1,500억 원(분리 OLS와 SUR)으로 예측되는 세수수준의 1% 내지 2%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관세율의 인하가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핀다. 여기서는 전체 평균관세율 기준으로 동등한 관세율 인하라 하더라도 품목군별 인하구조의 차이에 따라 관세세수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관세율 인하시나리오를 비교한다.

① 균등인하 시나리오 : 1999년 수입액으로 가중한 평균관세율이 1999년의 5.0% 수준에서 4.0%로 인하되 3개 품목군에서 균등하게 20% 포인트(=(5-4)/5)씩 인하되어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세율이 각각 8.41%, 3.71%, 3.06%가 된다.

② 차등인하 시나리오 : 역시 1999년 수입액으로 가중한 평균관세율이 1999년의 5.0% 수준에서 4.0%로 인하되 소비재는 35% 인하되고 원자재와 자본재는 그 절반인 15% 포인트만 인하되어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세율이 각각 6.83%, 3.95%, 3.25%가 된다.

이상의 두 시나리오는 <표 III-8>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8> 1998년 실적세율과 세율변화 시나리오

(단위 : %)

	소비재	원자재	소비재	전체
1999년	10.51	4.65	3.82	5.00
균등인하	8.41	3.72	3.06	4.00
차등인하	6.83	3.95	3.25	4.00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차기 WTO 라운드에서 관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세인하방식들이 제안 및 논의되고 있는데, 그 방식들은 크게 관세율을 가능한 한 전품목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는 방식과, 현행 관세율이 높을수록 더 큰 비율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관세인하방식 중 어느 것을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가능성 향상 정도,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된 고려요인이 되겠지만, 부차적이거나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방식별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I-9>는 2003년 기준으로 위에서 상정한 관세율 인하 시나리오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수합수별 세수예측치를 보여준다. 집계 OLS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인하가 있을 때 약 2조 6천억 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분리 OLS일 경우 약 1조 8천억 원 내지 1조 9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lt;표 III-9&gt; 관세율 인하의 세수효과 예측

(단위 : 10억원, %)

시나리오	집계 OLS	분리 OLS				SUR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합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합계
無인하 (A)	11,492.2 (100.0)	2,980.8 (100.0)	4,944.1 (100.0)	3,205.9 (100.0)	11,130.8 (100.0)	2,955.2 (100.0)	4,755.8 (100.0)	2,905.3 (100.0)	10,616.2 (100.0)
균등인하 (B)	8,868.3 (77.2)	2,618.2 (87.8)	3,800.0 (76.9)	2,764.3 (86.2)	9,182.5 (82.5)	2,617.1 (88.6)	4,113.5 (86.5)	2,700.2 (92.9)	9,430.8 (88.8)
(A-B)	2,623.9	362.6	1,144.1	441.6	1,948.3	338.1	642.3	205.1	1,185.4
차등인하 (C)	8,868.3 (77.2)	2,375.5 (80.0)	4,058.5 (82.1)	2,868.6 (89.5)	9,302.6 (83.6)	2,389.2 (80.8)	4,265.4 (89.7)	2,750.1 (94.7)	9,404.7 (88.6)
(A-C)	2,623.9	605.3	885.6	337.3	1,828.2	566.0	490.4	155.2	1,211.5

주 : 괄호 안은 1999년 실적세율이 유지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

품목군별로 세수함수를 분리하지 않은 집계 OLS의 경우에는 당연히 두 시나리오의 차이로 인한 세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품목군별로 세수함수를 분리하여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세율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세수 변화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다. 분리 OLS 함수를 이용하면, 균등인하의 경우 1조 9천억 원, 차등인하의 경우 1조 8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SUR 모형을 이용하면, 균등인하의 경우 1조 1,900억 원 세수 감소, 차등인하의 경우 1조 2,100억 원 세수 감소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른 한편, 각 추정방식이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율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집계 OLS의 경우 22.8%의 세수 감소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세율의 인하가 20%로 상정된 점을 고려해보면,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관세율의 인하는 수입량을 증가시켜 관세율의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동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리 OLS의 경우에도 전체세수는 17.5% 감소를 예측하고 있으나 원자재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반면, SUR 모형은 모든 품목군

에서 20% 미만의 세수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SUR 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에 든 집계 OLS와 분리 OLS의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설정(specification)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추정식들과 같은 설정이 통상적으로 간단한(parsimonious) 세수함수 설정에서 흔히 채택되는 형태임을 고려하면, 위의 결과는 SUR 모형의 유용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6. 요약과 결론

### 가. 관세세수 추계방식의 개선내용

이 연구는 기존의 세수함수를 이용한 관세세수 추계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시도하였다. 수입품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품목군별로 분리하여 복수의 세수함수를 추정, 각 회귀식 내의 관세율은 해당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들을 대표할 수 있는 관세율을 사용함으로써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수함수를 추정하되 모든 세수를 집계하여 추정하는 방식, 품목군별로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식, 품목군별 세수함수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SUR 모형을 추정하는 방식을 모두 행하였다.

단일세수함수 추정과 복수세수함수 추정의 결과를 경제적 이론과의 일치여부 및 세수예측력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며 모형을 불문하고 대부분이 경제이론에 의한 예측과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 MSE나 MAD 기준의 세수예측력 평가에서는 분리추정보다는 오히려 관세세수 전체를 집계하여 추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세수함수 추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2003년 평균실적관세율 4%

를 목표로 관세율을 균등인하(현행 관세율에서 모든 품목군의 세율을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는 방식)하는 방식과 소비재를 더욱 많이 인하하는 차등인하 방식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균등인하의 경우 세수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세수함수를 분리하여 추정하되 세수함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이 이론적 고려와 가장 잘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세수함수를 보다 개선한다면 경제상황의 변화 및 관세율구조의 개편이 관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앞으로의 추가적 개선방향

우선, 짧은 시계열을 보다 확장함으로써 통계적 신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품목군 구별이 1990년 이후로만 되어 있는 것을 그 이전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보다 장기의 시계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실적관세율보다 정책의지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품목군별 대표관세율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액으로 가중평균한 실적관세율을 사용하였다. 실적관세율은 과거의 통계로부터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세율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수입액과 수입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내생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법은 실적관세율이 아닌 실행관세율을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인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변수로 가중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행관세율의 일관성 있는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작업을 요할 것이다.

끝으로 수입수요함수의 체계적 추정이나 거시경제모형으로의 관세체도의 체계적 통합을 통해 세수추계의 이론적 근거와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효과

### 1. 연구 배경

조세감면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받은 세금을 다시 납세자에게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접적 지출인 예산지출과 대비하여 간접적 지출 또는 숨겨진 지출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조세지출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OECD는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을 예산자료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예산참고자료에 조세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감면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산업의 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세제가 복잡해지고, 세율이 축소되고,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체하여 일반 법률과 세법에 존재하는 모든 조세특례조항을 신규 법규로 통합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개별 감면조항에 일몰규정을 도입하고, 조세지원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등 조세감면을 정비해가고 있다.

조세지출의 규모에 대한 추정은 조세를 통한 간접적 지출과 예산을 통한 직접적 지출을 비교하여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과 특정 조세지원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 즉,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처럼 조세지출을 사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예산의 의미가 사전적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므로 조세지출의 규모를 추정한 자료에 예산을 더한 전체 지출을 바탕으로 국가재원(예산)을 배분한다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조세감면의 규모는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 폐지, 강화 등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새로운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당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세수 감소) 규모가 해당 조세지원의 효과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에 대한 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과세자료가 없어 조세감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감면 항목도 많다. 특히, 간접세는 직접세와는 달리 조세감면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그 규모를 추정하기 힘들다. 간접세에 대한 조세감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감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재화의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였을 경우의 조세수입 증가를 조세감면 규모로 보고 있으므로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하여 특정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경우의 세수 증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정된 조세감면 규모는 향후 조세감면 축소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 2. 조세지출(감면) 개요

### 가. 조세지출의 유형, 대상 및 규모

#### 1) 유형

조세지출의 유형으로는 특정 수입을 과세 기반(소득)에서 제외하

는 비과세(Exemption),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공제(Allowances, Deduction),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감면(Credit),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Rate Relief),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점을 연기하는 과세이연(Tax Deferrals)이 있다.

또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직접적으로 경감해주는 직접적인 방식과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등 세금의 납부 시기를 이연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직접감면의 경우 감면 대상의 세금부담이 감소되고 감소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반면 간접감면은 당해 연도의 세금부담은 감소되지만 감소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 2)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조세지원을 보면 그 대상 또는 목표가 중소기업, 기술·인력개발, 투자, 지역개발, 산업구조조정, 공공사업, 저축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낙후 부문에 대한 지원, 산업의 합리화 및 고도화, 저축 장려가 주요 정책목표임을 알 수 있다.

조세감면의 대상과 지원 수준은 매년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대략적인 추세는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기업의 경쟁력 강화, 세제의 단순화 및 명료화, 조세감면의 국제적 조화라 할 수 있다.

## 3) 규모

조세감면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의 11.8%에서 1987년의 16.1%로 증가한 다음 1997년의 경우 5.5%로 낮아지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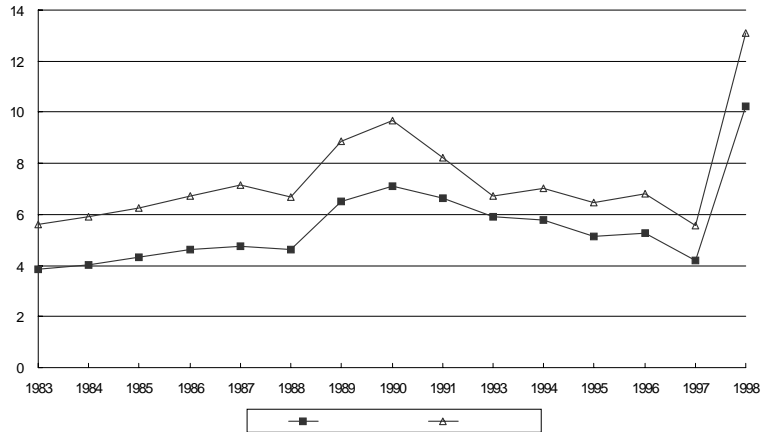
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1998년 통계에 따르면 조세감면의 규모는 약 7조 7천억 원으로 이전의 규모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이전의 통계에서 제외되었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개된 조세감면 통계를 전체적인 조세감면 규모로 받아들이지는 안 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세감면의 대상을 모두 포괄하여 조세감면의 규모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처럼 통계에서 누락되는 비과세 및 감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세감면의 규모를 기준으로 조세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도 힘들다. 조세감면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세지원의 수준과 조세감면 대상이 갖는 외부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이지만 외부효과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관련 제품의 면세처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은 감면 규모를 기준으로 조세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곧바로 정부의 재정적 손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조세감면 규정을 폐지할 경우 납세자는 이전과는 다른 투자 행태를 보이게 되어 조세감면 규모만큼 세입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폐지되면 민간의 투자 규모는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를 하게 된다. 또한 조세감면의 규모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조세감면 비율에 대한 추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조세지원 수준의 변화를 논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조세감면이 증가하는 원인은 감면 규정의 신설일 수도 있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투자세액감면 등 감면 신청이 많아져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1] 조세감면 추세



자료 : 재정경제부 내부자료.

### 3. 부가가치세 제도와 감면 현황

#### 가. 부가가치세의 개요

먼저 면세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적 골격을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부가가치세란 재화와 용역이 생산·수입·유통 등 최종소비(수요) 시점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만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투자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국민총생산형, 소득형, 소비형으로 구분된다. 국민총생산형의 경우 투자가 과세대상이 되고, 소득형의 경우 투자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액수가 과세대상이며, 소비형은 투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투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입

과 소비(민간+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으로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는데 가산법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소득, 다시 말하면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등을 합산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공제법은 전단계거래공제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이 있다. 전단계 거래공제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인 반면 세액공제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나. 감면제도

부가가치세 세율은 경감세율, 표준세율, 할증세율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이다. 할증세율은 없으며, 경감세율로는 면세와 영세율 제도가 존재한다.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면세인 경우 매출액에 대한 세율은 0이지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up>25)26)</sup>.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세율이 0이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 단계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sup>27)</sup>. 이러한 감면제도가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므로 그 대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대상 재화는 주로 수출

25) 농수산 제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6)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다단계 비누적적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 기본골격을 붕괴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면 다음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는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27) 영세율의 경우에도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최종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수하게 된다.

및 외화 획득과 관련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수·축산업, 국방, SOC, 장애인 관련 물품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sup>28)</sup>.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도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다. 영세율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는 그 대상이 재화와 용역, 수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수출을 제외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대상품목이 제한적이라면 면세제도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생활필수품, 농·수·축산업 관련 물품, 의료보건, 교육, 문화, 체육, 공공단체의 용역 등이다<sup>29)</sup>.

#### 다. 조세감면 측정

조세지출 또는 조세감면(tax expenditure)은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로부터 벗어난 세제상의 규정이라는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고려해보자. 먼저 부가가치세제의 기준조세체계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수입품 및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재화에 대해 무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조세체계가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투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을 포함한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수출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수출재화 이외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수가 감소하면 그 감소 규모가 조세지출이 된다<sup>30)</sup>.

28) 법규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29) 법규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면세의 조세지출 효과는 면세 규정이 어느 단계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면세되는 물품이 최종 소비단계에서 면세되는지 중간단계에서 면세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조세지출의 규모는 중간재로 사용되는 다른 재화의 면세 규정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또한 조세감면의 규모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는 대상 품목 중 몇 개가 과세로 전환되는가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 개의 재화가 면세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규모를 최종 단계와 중간단계로 나누어 추정하기로 한다<sup>31)</sup>. 그 후 모든 재화가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로 한다.

- 
- 30) 조세지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폐지될 경우 증가할 세입의 규모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 등은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31)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일반납세자, 조세특례자로 구분된다. 조세특례자의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공급가액에 업종별 매출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자의 존재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면세가 재화 유형별로 설정된 반면 조세특례는 납세자에 대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즉, 재화와 업종이라는 별개의 구분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산업연관표에 납세자별 구분 및 업종을 고려할 방법이 없다. 둘째, 조세특례자로 인한 세수 손실은 과세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면세는 면세 재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세특례자는 공급가액에 업종별 매출액을 곱하므로 면세상품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반면 과세재화는 낮은 부가가치율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특례자의 공급가액에서 면세재화가 포함되는 수준이 필요한데 이를 알 수가 없다.

#### 4. 1개 재화 과세 전환효과

##### 가. 최종단계 면세

##### 1) 소비

최종단계에서는 소비(민간 및 정부), 수입, 수출의 경우로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면세인 재화를 X라 하고, X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 투입물은  $A_i$ 라 하자. 논의의 편의상  $i$ 는 1, 2, X의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1은 과세상품, 2는 면세상품, X는 X재(최종 재화의 중간재로 사용)를 의미한다고 하자<sup>32)</sup>. 또한 X재의 최종 소비는  $C_X$ 라고 표기하자.

X재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없다. 그러나 면세 규정이 없다면 과세당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은  $0.1 C_X$ 가 되고 매입세액은 과세재화에만 적용되므로  $0.1 A_1 + 0.1 A_X$ 가 된다. 조세지출은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0.1 C_X - 0.1 A_1 - 0.1 A_X$ 가 조세지출이 된다.

소비되는 경우의 조세지출

- ※ 받은 부가가치세 = 0
- ※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0.1 C_X$ ) - 매입세액( $0.1 A_1 + 0.1 A_X$ )
- ※ 조세지출 =  $(0.1 C_X) - 0.1 A_1 - 0.1 A_X$

3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도 있지만 영세율은 재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소비지(국내, 해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2) 수출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출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면세인 X재가 과세로 전환되면 소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만큼 조세지출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비와는 달리 수출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세지출은 그만큼 축소된다.

이를 수식으로 살펴보자. 앞에서처럼 X재가 면세재화이며, X재의 수출은  $E_X$ 라고 하자. 이 경우 매출액  $E_X$ 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중간단계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하고, 매입세액은 면세상품이 아닌 과세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0.1A_1$ 이 된다<sup>33)</sup>. 즉,  $0.1A_1$ 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만약 X재에 대한 면세 규정이 없다면 중간재로 사용한 X재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X재에 대한 면세 규정이 없을 때 환급해 주어야 할 규모는  $0.1A_1 + 0.1A_X$ 가 된다.

조세지출은 받아야 할 세금에서 받은 세금을 차감한 것이므로  $-0.1A_X$ 가 조세지출이 된다. 결과적으로 수출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세수의 증가를 위해서라면 수출 비중이 작은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3) 값이 음수로 나타나므로 환급을 의미한다.

수출되는 경우의 조세지출

※ 받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0) - 0.1  $A_1$  (환급)  
 ※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0) - 매입세액(0.1  $A_1$  + 0.1  $A_X$ )  
 ※ 조세지출 = - 0.1  $A_X$

3) 수입 및 투자

X재가 수입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를 고려해보자. X재의 수입을  $I_X$ 라 하면 받은 부가가치세는 없다. 그러나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0.1  $I_X$ 가 된다. 따라서 조세지출, 즉 면세로 인한 세수의 손실은 0.1  $I_X$ 가 된다.

X재가 투자된 경우에는 투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할 수 없다. 따라서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은 없다.

수입되는 경우의 조세지출

※ 받은 부가가치세 = 0  
 ※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 0.1  $I_X$   
 ※ 조세지출 = 0.1  $I_X$

4) 합계

X재가 최종단계에서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의 규모는 소비, 수출, 수입의 경우를 합한 것이 된다. 또한 소비, 투자, 수출에 사용된 중간투입물의 비율은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에서 소비, 투자,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 따라서 X재의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alpha_X$ 와  $\beta_X$ 라고 하자. 이

경우 최종단계에서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은 다음과 같다.

<p>최종단계 면세의 조세지출</p> <p>※ <math>0.1 [ C_X - \alpha_X A_1 - \alpha_X A_X - \beta_X A_X + I_X ]</math></p>
--

#### 나. 중간단계 면세

##### 1) 소비

이번에는 X재가 중간재로 사용되며, 최종단계의 재화는 Y라고 하자. 최종단계의 재화가 면세이면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X재가 면세이든 과세이든 매입세액공제가 없으므로 X재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이 없다. 따라서 Y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비, 수출 등 중간재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한 가정을 하기로 하고  $A_X$ 가 X재라고 하자.

Y재가 소비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0.1 C_Y$ 가 되고 매입세액은  $0.1 A_1$ 이 된다. 매입세액에는 Y재가 중간재로 사용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X재에 대한 면세 규정이 없으면 매출세액은 동일하지만 매입세액은  $0.1 A_1 + 0.1 A_X$ 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조세지출은  $-0.1 A_X$ 가 된다. 조세지출이 음수라는 것은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하지 않고 세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4)</sup>. 이

34) 다시 말하면 중간단계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면세는 면세의 역할보다는 중과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는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은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낮은 재화란 것을 시사한다.

소비재 면세의 조세지출 ※ 받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0.1 C_Y$ ) - 매입세액( $0.1 A_1$ ) ※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0.1 C_Y$ ) - 매입세액( $0.1 A_1 + 0.1 A_X$ ) ※ 조세지출 = $- 0.1 A_X$
---

2) 수출

Y재가 수출되는 경우에도 이전과 동일한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자. 전과 마찬가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X재가 면세인 경우 환급액수는  $0.1 A_1$  이 된다. 그러나 X재가 면세되지 않으면 환급해야 할 규모는  $0.1 A_1 + 0.1 A_X$ 가 된다. 따라서  $- 0.1 A_X$ 가 조세지출이 되며 이는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할 경우 환급 증가로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재 면세의 조세지출 ※ 받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0) - 매입세액( $0.1 A_1$ ) ※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0) - 매입세액( $0.1 A_1 + 0.1 A_X$ ) ※ 조세지출 = $- 0.1 A_X$
---

수입재화는 면세재화가 중간재로 사용될 수 없다. Y재가 수입품일 경우에는 X재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투자에 사용된 경우도 조세지출이 없다. 결과적

으로 Y재의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alpha_Y$ 와  $\beta_Y$ 라고 하면 다른 재화의 중간재로 면세재화가 사용된 경우에 조세지출은 다음과 같다.

과세재화의 중간재 면세의 조세지출 $\ast - 0.1 A_X [\alpha_Y + \beta_Y]$
---

따라서 최종재로 사용된 경우와 중간재로 사용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조세지출의 규모는  $0.1 [C_X - \alpha_X A_1 - \alpha_X A_X - \beta_X A_X + I_X - (\alpha_Y + \beta_Y) A_X]$ 이 된다.

1개의 재화가 아닌 K개의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과 동일하게 X재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X재를 제외한 여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재화를 Z라고 하자. 이 경우 최종소비단계에서 매출세액은  $0.1 C_X$ 가 되고 매입세액은 과세재화에만 적용되므로  $0.1 A_1 + 0.1 A_X + 0.1 A_Z$ 가 된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0.1 C_X - 0.1 A_1 - 0.1 A_X - 0.1 A_Z$ 가 된다. 수출되는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과세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조세지출의 규모는  $- 0.1 A_X - 0.1 A_Z$ 가 된다. 수입은 중간투입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전과 같이  $0.1 I_X$ 가 조세지출이 된다. 결과적으로 최종단계 면세의 조세지출 규모는  $0.1 [C_X - \alpha_X(A_1 + A_X + A_Z) - \beta_X(A_X + A_Z) + I_X]$ 가 된다.

다음으로 중간단계 면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최종단계의 재화는 Y라고 하면 Y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만 조세지출이 발생한다. 이전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조세지출은  $- 0.1 A_X -$

0.1  $A_Z$ 가 된다. 수출되는 경우도 동일한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하므로  $-0.1 A_X - 0.1 A_Z$ 가 된다. 수입이나 투자인 경우에는 조세지출의 문제가 없으므로 다른 재화의 중간재로 면세재화가 사용된 경우에 조세지출 규모는  $-0.1 (A_X + A_Z) (\alpha_Y + \beta_Y)$ 가 된다.

따라서 최종재로 사용된 경우와 중간재로 사용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조세지출의 규모는  $0.1 [C_X - \alpha_X(A_1 + A_X + A_Z) - \beta_X(A_X + A_Z) + I_X - (A_X + A_Z) (\alpha_Y + \beta_Y)]$ 가 된다. 이를 1개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조세지출의 규모가 특정 재화, 즉 X재의 조세지출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세지출의 규모는 특정재화의 합으로 나타나므로 X재만 과세재화로 전환되는 경우보다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합의 수가 너무 많아 1개 재화가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와 모든 재화가 과세로 전환되는 2가지 경우만 다룬다.

#### 다. 추정자료

앞의 논의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재화별로 과세 및 면세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간단계에 무엇을 사용하며 그 규모는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 셋째, 수출입의 비중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하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추정하기로 하자<sup>35)</sup>. 캐나다의 경우에도 소비세의 경우에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추계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한 면세와 과세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에서 가장 세부적인 분류인 402개 부분을 선택하

35)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5년마다 작성되며 현재 1995년 산업연관표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고, 생산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sup>36)</sup>.

먼저 산업연관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sup>37)</sup>. 산업연관표의 구조는 거래관계에 따라 크게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분된다. 내생부문이란 모형 내에서 값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는 각 부문 상호 간의 거래가 기록되는데 산업연관표의 핵심적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표 IV-1>에서 A로 표시된 부문). 외생부문은 모형 밖에서 값이 결정되는 되는 것을 말한다. 외생부문의 종축(column)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를 나타내며, 횡축(row)은 피고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보조금 등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산업연관표의 종축은 수요를 나타내며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구성되고, 횡축은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즉, 횡축은 특정 부문의 생산물이 다른 부문의 중간재로 사용되거나 최종재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종축은 특정 부문이 다른 분야를 중간재로 사용하거나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을 보여준다.

---

36) 중간재에 해당하는 내생부문이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다. 계산방법의 논의는 간접세가 포함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자료가 없으므로 내생부문의 자료를 사용한다. 중간투입물이 주로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내생부문에 간접세가 포함될 경우 조세지출의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37) 더 자세한 설명은 강광하, 『산업관련분석론』 참조

<표 IV-1> 산업연관표의 형태

수요		내생부문			외생부문				총 수요	수입	산출
		상 품 1	상 품 2	중 간 수 요 합 계	민 간 소 비	정 부 소 비	투 자	수 출			
내 생 부 문	상품 1 2 :	A									
	중간투입계										
외 생 부 문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보조금										
부가가치계											
총투입액											

자료 : 강광하, 「산업관련분석표」

<표 IV-1>에서 내생부문인

$$A = \begin{bmatrix} A_{1,1} & A_{1,2} & \dots & A_{1,402} \\ A_{2,1} & A_{2,2} & \dots & A_{2,402}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A_{402,1} & A_{402,2} & \dots & A_{402,402} \end{bmatrix} \text{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행렬의 원소  $A_{ij}$ 는  $j$ 번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i$ 번째 재화를 의미한다.

라. 계산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GAUSS 통계패

키지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계산하였다. 먼저 산업연관표에 없는 자료인 재화의 면세 여부를 구분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재화가 면세이면 0, 과세이면 1이라는 부호를 부여하였다<sup>38)</sup>.

다음으로 상품별로 소비 또는 수입되는 규모, 최종수요 대비 소비 및 수출 비율( $\alpha$ ,  $\beta$ )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구하였다. 그러나 산업연관표에 소비, 수출, 최종 수요가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소비가 음수인 경우에는 소비로 인한 조세지출을 0으로 처리하였다. 수출이 음수인 경우에는 수출비율을 0으로, 최종수요가 음수인 경우에는 소비 및 수출 비율을 0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처리를 한 다음 자료를 하나씩 불러들인다. 따라서 맨 처음 들어오는 자료는 첫 번째 재화의 가로 축에 있는 402개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1번째 재화인 벼의 경우  $A_{1,2}$ 부터  $A_{1,402}$ 까지는 벼가 여타 생산물의 중간재로 사용된 것을 나타낸다. 여타 재화가 과세이어야 조세지출(실제적으로는 누적효과로 조세수입이 증가)이 발생하므로 과세 대상인 재화인 경우만 중간재로 사용된 값을 더하면  $A_X$ 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미리 구한  $\alpha_Y + \beta_Y$ 를 곱하면 중간재 면세일 때 조세지출 규모인  $-0.1 A_X [\alpha_Y + \beta_Y]$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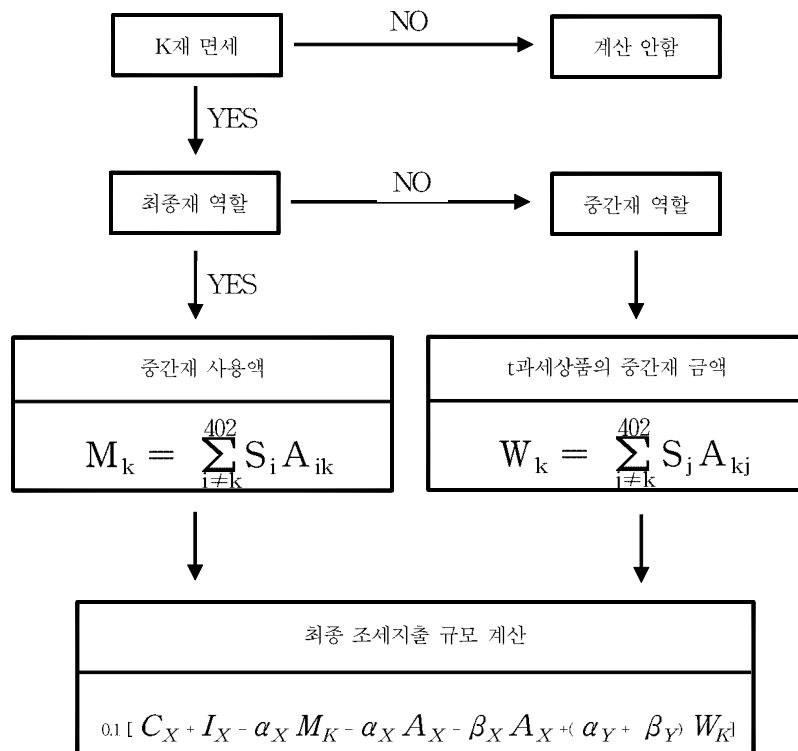
벼가 최종단계로 사용된 경우의 조세지출은  $C_X + I_X$ ,  $(\alpha_X + \beta_X)A_X$ ,  $\alpha_X A_1$ 로 나누어 구한다. 먼저  $C_X$ 와  $I_X$ 는 산업연관표의 외생부문에 수치가 있다. 또한 벼가 자신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된 것은  $A_{1,1}$ 이므로 맨처음 읽어들이는 자료에서  $A_X$ 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  $\alpha_X$ ,  $\beta_X$ 를 곱하면  $(\alpha_X + \beta_X)A_X$ 를 구할 수

38) 일부 대상, 예를 들어 농업용 유류같은 경우는 과세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면세 대상으로 본 재화의 종류는 부표에서 알 수 있다.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재로 사용한 과세 재화의 규모인  $A_1$ 을 구한다. 비의 경우 2번째부터 402번째까지 읽어들이는 자료  $A_{i,1}(i=2, \dots, 402)$ 가 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중간재로 사용한 것이므로 과세인 재화만을 골라 합하면  $A_1$ 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한 값에  $\alpha_X$ 를 곱하면 필요한 수치, 즉  $0.1 [C_X - \alpha_X A_1 - \alpha_X A_X - \beta_X A_X + I_X]$ 를 구할 수 있다.

[그림 IV-2] K번째 재화의 조세지출 계산



주 : S = 1이면 해당 재화 과세, S = 0이면 해당 재화 면세  
 마. 추정결과

특정 면세재화만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세지출에 대한 식은  $0.1 [C_X - \alpha_X A_1 - \alpha_X A_X - \beta_X A_X + I_X - (\alpha_Y + \beta_Y) A_X]$ 이다. 따라서 소비 및 수입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간 투입물이 과세되지 않을수록, 해당 재화가 과세되는 재화의 중간재로 사용되지 않을수록 조세지출의 규모가 커진다. 추정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최종재 성격보다 중간재 성격이 강한 경우 조세지출의 규모가 작거나 음수(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세수가 증가)로 나타나는 반면 최종재 성격이 강할수록 조세지출의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sup>39)</sup>.

<표 IV-2> 주요 상품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1995년 기준)

(단위 : 10억원)

상품명	조세지출	상품명	조세지출
채소	402.6	주택소유	1,774.6
통화금융기관	- 408.2	중앙정부	1,021.2
비통화금융기관	- 368.5	지방정부	638.9
기업내 연구개발	- 294.2	교육기관(국공립)	1,000.7
정미	428.7	교육기관(사립)	794.8
도로여객운송	313.5	의료 및 보건(비영리)	207.7
생명보험	537.4	의료 및 보건(산업)	333.6

추정결과(1995년도 기준)를 보면 주택 소유, 각급 정부, 교육 및 의료, 생명보험, 식료품, 여객운송 등이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39) 면세재화의 개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세부 자료는 부표를 참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소유로 인한 부가가치(자가임대소득)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규모가 1조 7,74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국공립교육기관에 대한 면세로 조세지출의 규모가 1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이나 기업내 연구개발 등에 대한 과세는 세수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자. 김유찬(1998)의 연구를 보면 은행 부문의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 효과를 약 9,200억 원(1995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험부문은 약 2조 1천억 원(생명보험 1조 4천억 원, 손해보험 7천억 원 : 1996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시 약 2,800억 원(1997년 기준), 사설학원의 교육용역을 과세 전환시 약 5,500억 원(1995년 기준)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추정치 모두 매입세액 공제, 즉 중간 투입물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없으므로 본 연구와는 당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은행(통화금융기관)의 조세지출은 4,082억 원이다. 따라서 통화금융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과세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비통화금융기관도 유사한 조세지출 규모를 나타내므로 금융기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만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부문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생명보험은 5,374억 원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1,027억 원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은 최종재 성격이 강하고, 손해보험은 중간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손해보험은 사업자가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수 증가를 위해서라면 생명보험만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 인적용역은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추정하지

않았다.

## 5. 모든 재화 과세

### 가. 추정 수식

#### 1) 소비

모든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종단계와 중간단계 구별할 필요가 없이 모든 재화에 대하여 최종단계를 기준으로 중간투입물을 고려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자.

최종 소비단계에서 특정 재화  $X$ 는 과세 재화인 경우와 면세 재화인 경우가 있다. 먼저 면세재화인 경우 과세당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없다. 그러나 면세 규정이 없다면 과세당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은  $0.1 C_X$ 가 되고 모든 재화가 과세로 전환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은  $0.1 A$ 가 된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0.1 C_X - 0.1 A$ 가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 특정 재화가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보다 조세지출이 축소된다.

다음으로 과세재화인 경우를 고려해보자.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상품만 매입세액공제를 하므로  $0.1 C_X - 0.1 A_1$ 가 된다. 그러나 모든 재화가 과세로 전환되면  $0.1 C_X - 0.1 A$ 이 징수된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0.1 A_2$ 가 된다.

소비되는 경우 : 면세재화

※ 받은 부가가치세 = 0  
 ※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0.1  $C_X$ ) - 매입세액(0.1  $A$ )  
 ※ 조세지출 = 0.1  $C_X$  - 0.1  $A$

소비되는 경우 : 과세재화

※ 받은 부가가치세 = 0  
 ※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0.1  $C_X$ ) - 매입세액(0.1  $A_1$ )  
 ※ 조세지출 = -0.1  $A_2$

2) 수출 및 수입

다음으로 수출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의 구별이 없어진다. X재가 수출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된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현재 징수하는 세액은 - 0.1  $A_1$ 이 된다. 즉, 0.1  $A_1$ 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재화에 대해 면세 규정이 없다면 모든 중간재화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0.1  $A_2$ 가 되며 특정 재화만 면세가 되는 경우보다 모든 재화가 면세될 때 조세지출이 축소된다.

수출되는 경우 : 모든 재화

※ 받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0) - 0.1  $A_1$  (환급)  
 ※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0) - 매입세액(0.1  $A$ )  
 ※ 조세지출 = - 0.1  $A_2$

수입되는 경우 중간투입물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세상품은 세입의 차이가 없다. 다만 면세상품을 과세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0.1 I_X$ 가 된다. 따라서 조세지출, 즉 면세로 인한 세수의 손실은  $0.1 I_X$ 가 된다.

수입되는 경우 : 면세 상품

- ※ 받은 부가가치세 = 0
- ※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  $0.1 I_X$
- ※ 조세지출 =  $0.1 I_X$

### 3) 합계

모든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는 개별 재화의 소비, 수출, 수입의 경우를 합한 다음에 개별 재화의 조세지출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따라서 X재의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alpha_X$ 와  $\beta_X$ 라고 하면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은 다음과 같다.

모든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text{※ } \sum_{X=1}^{402} 0.1[(1-S_X)(C_X - \alpha_X A) - S_X \alpha_X A_2 - \beta_X A_2 - (1-S_X)I_X]$$

$S_X$ 는 과세인 경우 1, 면세인 경우 0

#### 나. 추정결과

모든 재화가 과세로 전환된 경우의 조세지출 수식은  $(1-S_X)(C_X - \alpha_X A) - S_X \alpha_X A_2 - \beta_X A_2 - (1-S_X)I_X$  이다. 따라서  $C_X$ ,  $I_X$ ,  $S_X$ ,  $\alpha_X$ ,  $\beta_X$ ,  $A$ ,  $A_2$ 를 알면 된다.  $C_X$ ,  $I_X$ 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S_X$ 와  $\alpha_X$ ,  $\beta_X$ 는 앞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면 된다. 또한  $A$ ,  $A_2$ 도 앞과 유사한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

모든 재화가 과세로 전환된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는 1995년을 기준으로 약 4.8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연도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연관의 구조(투입 구조 및 항목별 구성비)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규모만 변한다고 가정하자. 즉, 산업연관은 불변이므로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율은 GDP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하는 이유는 개별 항목별로 성장률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때마다 부문의 수가 변동하므로(현재 402개) 기존의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특정 산업의 소비(생산) 증가율을 추정하기 어렵다. 둘째, 증가율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여도 중간 투입물의 변화를 알 수 없으므로 조세지출의 규모를 정확히 구하기는 어렵다<sup>40)</sup>.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조세지출의 규모는 1996년 5조 3천억 원, 1997년 5조 9천억 원, 1998년 5조 9천억 원, 1999년 6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sup>41)</sup>. 그러나 본 추정치는 산업구조의 변화, 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대략적인 추정치로 이해하여야 한다.

40) 생산함수(산업연관구조)는 불변으로 가정하고 수요함수만 추정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논평자의 견해가 있다.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투입물의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적합성은 의문이다. 또한 수요함수를 추정하려면 개별 402개 재화에 대해 수요함수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수요함수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개별 상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정방법이 동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과제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요함수에 대한 추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함수를 적용하여 특정 재화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면 더 정확한 추정치가 되리라고 믿는다.

41) GDP 경상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이용함. 해당 자료는 「경제동계월보」, 「재정금융통계」 등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1999년도의 경우는 추정치인 10.7%를 사용한다. 1995년 이후 경상성장률은 다음과 같다(1996 : 10.5%, 1997 : 11.3%, 1998 : 0.1%, 1999 : 10.7%)

&lt;표 IV-3&gt; 면세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

(단위 : 조원)

	1995	1996	1997	1998	1999
금액	4.776	5.278	5.874	5.880	6.509

&lt;표 IV-4&gt;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세수추계(1995년도)

(단위 : 조원)

생산법(Production Method)	28부문	77부문	168부문	402부문
부가가치계(GDP)	375.8	375.8	375.8	375.8
면세 부가가치(-)	-98.3	-79.2	-103.7	-132.7
투자(-)	-149.0	-149.0	-149.0	-149.0
면세투자	1.2	1.2	1.2	1.2
수입	127.7	127.7	127.7	127.7
면세수입(-)	-7.8	-9.7	-8.8	-11.4
수출(-)	-113.9	-113.9	-113.9	-113.9
면세수출	1.7	1.6	1.9	8.8
면세→과세 이전 총산출	52.0	32.5	47.4	49.9
부가가치세 과표	189.5	187.0	178.7	156.5
소비법(Consumption Method)	28부문	77부문	168부문	402부문
소비	240.7	240.7	240.7	240.7
면세소비(-)	-86.5	-86.6	-99.2	-135.6
과세→면세 이전 총산출	35.3	32.9	37.2	51.3
부가가치세 과표	189.5	187.0	178.7	156.5
면세규모(소비 - 과표)	51.21	53.68	61.99	84.24
면세로 인한 전체 조세지출	5.1	5.4	6.2	8.4

주 : (-)는 차감항목이고 그러한 표시가 없는 것은 가산항목임.  
 자료 : 성명재·박종규(1999)

모든 재화가 과세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는 성명재·박종규(1999)가 402개 부문에 대하여 추정한 결과치인 8.4조 원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 성명재·박종규의 연구에서는 전체 소비에서 면세 소비를 차감한 다음 면세부문에 사용된 투입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방법은 본 연구의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성명재·박종규(1999)와는 달리 과세 구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향후 추정치를 중심으로 하므로 이미 과세로 전환된 담배는 현재의 세법에 따라 과세로 취급한 반면 성명재·박종규(1999)는 1995년도 세법에 따라 면세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 수출, 수입이 0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경우 조세지출을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최종수요에서 소비 또는 수출의 비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비중을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였다. 성명재·박종규(1999)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상호 직접적인 비교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하여 조세지출의 규모가 큰 재화를 살펴보자(<표 IV-5> 참조). 이를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1조 5,635억 원, 정부 부문도 1조 5,416억 원, 교육기관이 1조 8,007억 원으로 나타남으로써 해당 부문이 주요한 조세지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료서비스, 생명보험, 도로운송서비스, 채소 등도 조세지출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공성이 큰 서비스부문의 조세지출이 대 규모로 나타나므로 조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V-5&gt; 조세지출이 큰 제화 (모든 제화 과세의 경우)

(단위 : 10억원)

상품명	조세지출	상품명	조세지출
광고	- 293.8	주택소유	1,563.5
채소	457.3	중앙정부	960.7
과실	213.3	지방정부	580.9
소매	- 235.6	교육기관(국공립)	996.2
도축육	151.3	교육기관(사립)	804.5
도로여객운송	407.4	의료 및 보험(비영리)	197.7
전신전화	240.9	사회복지사업(국공립)	318.8
생명보험	479.3		

## 6. 결론 및 시사점

추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를 조세지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골격에 따르면 조세지출로 보아야 하지만 소비세의 기본 골격을 생필품 면세, 일반상품 부가가치세 과세, 사치·고급상품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의 누진과세 구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금융, 교육, 의료, 정부부문, 비영리단체 등에 비과세를 하고 있다.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이 산업연관표의 상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에서 추정된 추정치도 대략적인 수치로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농민에게 공급되는 유류는 면세지만 산업연관표 자료는 유류가 농민에게 공급되는지 여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

또한 면세 규모 추정치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6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면세 분야가 외국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의 축소를 통하여 증가할 세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유찬(1998)은 전문인적용역, 영리목적 교육용역(학원), 농협 등 정부용역대행단체에 대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재로 사용되는 재화에 과세하는 경우에만 조세지출이 축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리목적 교육용역, 농협 등 정부용역대행단체, 기업이 아닌 개인에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 세입 증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는 우체국, 조폐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거나 무선국관리사업단 등 소규모 단체가 많다. 반면 농협, 수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도·소매업 등 공공성이 약한 사업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용역대행단체의 면세 여부는 용역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분야는 면세로 하는 반면 도·소매업 등은 정부용역을 대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폐지 및 군용·농업용 유류의 과세 전환도 세수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론은 세수 효과만을 살펴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농업, 교육, 국방 등에 대한 조세지출이 예산상의 지출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면세의 폐지는 곧바로 해당 분야의 예산 증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대신 예산지출을 통해 해당 분야를 보조하는 것이 용도 전환을 통한 탈세를 막고, 조세제도를 단순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고시키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축소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강광하, 『산업관련분석론』, 1991.
- 고영신, 『조세행정의 재량성에 관한 경험적 근거』, 200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2000.
- 김유찬,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 박기백, 『조세감면과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연구』, 1999.
- 박종규·김종일, 『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산업별 거시경제모형:KIPF99Q』, 연구보고서 99-04,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 성명재, 『단위근 검정과 세수추계』, 한국조세연구원, 1997.
- \_\_\_\_\_, 『미국과 캐나다의 세수추계』, 한국조세연구원, 1998.
- \_\_\_\_\_, 『세수추계모형과 세수전망 - IFGLS 방법을 이용한 SUR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5.
- \_\_\_\_\_,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소비세 세수추계』, 내부자료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성명재·박종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세수추계』,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성명재·현진권, 『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4.
- 세무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법』, 1998.
- 윤건영·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3.
- 임주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1997.
- 장근호, 『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제정경제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개요』, 1998.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조세정책 50년』, 1997.
- \_\_\_\_\_, 『조세관련 통계 자료집』, 2000.
- Berndt, Ernst R., *The Practice of Econometrics :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 Mass. : Addison-Wesley, 1991.
- Cilke, *The Treasury Individual Income Tax Simulation Model*,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Tax Analysis, 1994.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ax Expenditures : Compendium of Background Material on Individual Provisions*, Committee on the Budget United States Senate, 1996.
- Department of Finance, *Government of Canada Tax Expenditures*, Ottawa Canada, 1994. 12.
- Greene, W., *Econometric Analysis*, 3rd Edition, Macmillan, 1997.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Estimates of Federal Tax Expenditure for Fiscal Years 1997~2001*,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 OECD, *Tax Expenditures : Recent Experience*, 1996.
- OECD, *Revenue Statistics*, 2000.
- Surrey, S. S., *Pathways to Tax Reform : The Concept of Tax Expenditur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부록 1> 법인세 징수관련 세법 규정

### 1. 납부(법인세법 제64조)

-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2. 수시부과결정(법인세법 제69조)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

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1998.12.28.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3. 중간예납(법인세법 제63조)

-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공제되는 금액을 제외)
  -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1998.12.28. 개정)
-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1998.12.28. 개정)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c액을 제외)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⑤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⑦ 내국법인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 4.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1999.12.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1999.12.28. 개정)
-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8.12.28.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1998.12.28. 개정)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8.12.28.

개정)

- ⑤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9.12.28. 개정)
-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1998.12.28. 개정)
-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⑧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록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관련 세법 규정

### 1. 부가가치세법

#### 제11조 【영세율 적용】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1. 수출하는 재화
  -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②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977. 12.19. 개정)
-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의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1980.12.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1980.12.13. 개정)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1980.12.13. 개정)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1998.12.28. 개정)
  -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13. 개정)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13. 개정)
12. 토 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998.12.28. 개정)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12.28. 개정)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서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1998.12.28. 개정)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13. 개정)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12. 개정)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13. 개정)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98.12.28. 개정)
  8.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건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1980.12.13.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1980.12.13. 개정)
- 13의 2.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1998.12.28. 개정)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1998.12.28.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977.12.19. 개정)
  -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24조 【수출의 범위】

-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

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1995.12.30.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1998.12.31. 직제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1982.12.31. 개정)
-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1983.12.29. 신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1983.7.1. 개정)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1982.12.31. 개정)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1990.12.31. 개정)
- 5의 2. 삭제(1994.12.31.)
6.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1994.12.31. 개정)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등의 성명·국적·외교관면세카드 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999.12.31. 개정)

가. 음식·숙박용역

-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교통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1993.12.31. 개정)

다. 전력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1999.12.31. 개정)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 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5.12.30. 개정)

9.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기록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신기자와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1998.12.31. 직제 개정)

10. 삭 제(1999.12.31.)

- ② 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12.31. 직제 개정)
- ③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외교관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환급하되, 환급한도액은 연 1백만 원으로 한다.(1995.12.30. 신설)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이 영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99.12.31. 개정)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곡 류
2. 서 류

3. 특용작물류
  4. 과일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 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품(1998.12.31. 직제 개정)
  13. 소금(1977.6.29. 신설)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1977.12.30. 신설)
- ③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12.31. 직제 개정)

####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1995.12.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1988.6.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의생용역(1998.12.31. 직제 개정)

####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1993.12.31. 개정)

####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1998.6.24. 개정)
  -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1996.12.31. 개정)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1996.12.31. 개정)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1996.12.31. 개정)
  - 라. 자동차대여사업(1996.12.31. 개정)
3.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1998. 12.31. 개정)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1988.6.9. 개정)
- ③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1980.12.31. 신설)
-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2000.3.13. 개정)
-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1996.12.31. 개정)
-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1998.12.31. 직제 개정)

### 제32조의 2 【특수제조용담배 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1998.12.31. 신설)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998.12.31. 신설)

###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은행업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1988.12.31. 개정)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1997.12.31. 신설)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1997.12.31. 신설)
- 12의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1998.12.31. 신설)

- 12의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 용역(1998.12.31. 신설)
- 12의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업(1998.12.31. 신설)
- 12의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동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1999.12.31. 신설)
11. 기타 금전대부업
13. 기타 금전대부업(1997.12.31. 개정)
-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999.12.31. 개정)

####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1990.12.31. 개정)
-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980.12.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1998.12.31. 개정)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1977.6.29. 개정)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1977.6.29. 개정)
  -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1998.12.31. 개정)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1977.6.29. 개정)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기(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1977.6.29. 개정)
  -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1977.6.29. 개정)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1991.12.31. 개정)

- (㉞)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1977.6.29. 개정)
- (㉟)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1977.6.29. 개정)
- (㊱)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1977.6.29. 개정)
- (㊲)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1977.6.29.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1995.12.30. 개정)

-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1998.12.31. 개정)
- (나)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1995.12.30. 개정)
- (다)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1999.12.31. 개정)
- (라)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1988.6.9. 개정)
- (마)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1988.6.9. 개정)
- (바) 개·닭·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1999.12.31. 단서신설)

- (사)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1998.12.31. 신설)

####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1993.12.31. 개정)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1999.12.31. 개정)
-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983.7.1. 개정)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

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 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1999.12.31.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1998.12.31. 직제 개정)
4.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1998.12.31. 직제 개정)

####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1996.12.31. 개정)
-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 제40조 【수입미가공식품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1998.12.31. 직제 개정)

-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12.31. 직제 개정)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1998.12.31. 개정)

1.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1998.12.31. 직제 개정)
2.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1984.12.31. 개정)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1984.12.31. 개정)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1999.1.29. 개정)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2000.3.13. 개정)
6. 외국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동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1998.12.31. 신설)

**제4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

12.30. 개정)

1.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금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지용에 직접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제46조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1977.12.30.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1998.12.28. 개정)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1999.12.28. 신설)
4. 장애인용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1999.12.28. 개정)
-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1999.12.28. 개정)
-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1999.8.31. 개정)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사용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4.30. 개정)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농업용 또는 어업용석유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8.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1999.8.31. 신설)
  10.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1999.8.31. 신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1998.12.28. 개정)
1. 무연탄
  2.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6.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7.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 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가 2000년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이하 ‘아시아·유럽정상회의’라 한다)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9. 제10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와 제10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2000.1.12. 신설)

####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법 제105조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휠체어·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① 법 제106조 제1항 본문에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1999.6.30. 개정)
-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2000.1.10.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7.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염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 시장법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1999.10.11. 개정)
27. 전과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조직위원회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 나. 나잡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 다.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운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000.1.10. 개정)
-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 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1998.12.31. 개정)
- ⑩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8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항 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 ⑪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8.12.31. 개정)
- ⑫ 법 제10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제4호·제7호·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10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 제1항(제8항 제2호의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제8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내수면어업용선박 및 양식어업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2000.1.10. 개정)
- ⑬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자재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 규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⑭ 법 제106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등을 위한 건축자재·기계설비·전기설비·회의설비 및 실내장식용품 등으로서 법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⑮ 법 제106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등을 위한 건축자재·기계설비·전기설비·회의설비 및 실내장식용품 등으로서 법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1999.6.30. 개정)

- ⑯ 법 제106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등을 위한 건축자재·기계설비·전기설비·회의설비 및 실내장식용품 등으로서 법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1999.10.30. 개정)

## &lt;부표 II-1&gt; 면세대상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 10억원)

일련 번호	상 품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1	벼	-5.0	-5.5	-6.1	-6.1	-6.8
2	보리	-8.9	-9.8	-10.9	-10.9	-12.1
3	밀	34.6	38.2	42.6	42.6	47.2
4	잡곡	37.5	41.5	46.2	46.2	51.2
5	채소	402.6	444.9	495.2	495.7	548.7
6	과실	190.2	210.2	233.9	234.2	259.2
7	콩류	12.5	13.8	15.4	15.4	17.1
8	감자류	10.7	11.9	13.2	13.2	14.6
9	유지작물	17.8	19.7	21.9	21.9	24.2
10	약용작물	16.1	17.8	19.8	19.8	21.9
11	기타식용작물	0.2	0.2	0.2	0.2	0.3
12	섬유작물	2.7	3.0	3.4	3.4	3.7
13	일담배	-40.9	-45.2	-50.3	-50.3	-55.7
14	화훼작물	9.3	10.3	11.4	11.4	12.7
15	천연고무	0.1	0.1	0.1	0.1	0.1
16	종자및묘목	5.6	6.2	6.9	6.9	7.6
17	기타비식용작물	0.9	1.0	1.1	1.1	1.2
18	낙농	-88.1	-97.4	-108.4	-108.5	-120.1
19	육우	0.1	0.2	0.2	0.2	0.2
20	양돈	0.5	0.6	0.6	0.6	0.7
21	가금	-15.3	-16.9	-18.8	-18.8	-20.8
22	기타축산	30.7	34.0	37.8	37.8	41.9
23	육립	0.0	0.0	0.0	0.0	0.0
24	원목	-0.7	-0.7	-0.8	-0.8	-0.9
25	식용임산물	14.5	16.1	17.9	17.9	19.8
26	기타임산물	-0.3	-0.3	-0.4	-0.4	-0.4
27	해면어획	113.6	125.5	139.7	139.9	154.8
28	내수면어획	1.6	1.7	1.9	1.9	2.1
29	해면양식	-12.5	-13.8	-15.4	-15.4	-17.1
30	내수면양식	2.8	3.1	3.4	3.4	3.8
31	무연탄	-11.5	-12.8	-14.2	-14.2	-15.7

## &lt;부표 Ⅱ-1&gt; 의 계속

(단위 : 10억원)

일련 번호	상 품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44	원염	-4.6	-5.1	-5.7	-5.7	-6.3
46	도축육	204.1	225.6	251.0	251.3	278.2
47	가금육	27.9	30.9	34.4	34.4	38.1
54	수산냉동품	50.2	55.4	61.7	61.8	68.4
57	정미	428.7	473.7	527.3	527.8	584.3
58	정맥	-2.8	-3.0	-3.4	-3.4	-3.8
59	제분	-53.2	-58.8	-65.4	-65.5	-72.5
62	전분	-17.3	-19.1	-21.3	-21.3	-23.6
63	당류	-24.9	-27.6	-30.7	-30.7	-34.0
75	인삼식품	-1.7	-1.8	-2.0	-2.1	-2.3
77	두부	10.4	11.5	12.8	12.9	14.2
135	신문	-148.6	-164.2	-182.7	-182.9	-202.5
136	출판	-42.4	-46.8	-52.1	-52.2	-57.8
138	기록매체	0.0	0.0	0.0	0.0	0.0
139	연탄	3.3	3.7	4.1	4.1	4.5
312	수도	-47.7	-52.7	-58.7	-58.8	-65.1
318	도로시설	0.0	0.0	0.0	0.0	0.0
319	철도시설	0.0	0.0	0.0	0.0	0.0
320	지하철시설	0.0	0.0	0.0	0.0	0.0
321	항만시설	0.0	0.0	0.0	0.0	0.0
322	공항시설	0.0	0.0	0.0	0.0	0.0
323	하천사방	0.0	0.0	0.0	0.0	0.0
324	상하수도시설	0.0	0.0	0.0	0.0	0.0
334	철도여객운송	58.6	64.8	72.1	72.2	79.9
335	철도화물운송	1.1	1.2	1.3	1.3	1.5
336	도로여객운송	313.5	346.4	385.6	386.0	427.3
338	연안및내륙수상운송	-37.2	-41.1	-45.7	-45.8	-50.7
339	외항운송	2.2	2.4	2.7	2.7	2.9
347	우편	-23.6	-26.1	-29.1	-29.1	-32.2
348	전신전화	-75.7	-83.7	-93.1	-93.2	-103.2
350	방송(비영리)	-3.2	-3.6	-4.0	-4.0	-4.4

## &lt;부표 II-1&gt; 의 계속

(단위 : 10억원)

일련 번호	상 품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351	방송(산업)	-160.9	-177.7	-197.8	-198.0	-219.2
352	통화금융기관	-408.3	-451.1	-502.1	-502.6	-556.4
353	비통화금융기관	-368.5	-407.2	-453.3	-453.7	-502.3
354	생명보험	537.4	593.8	660.9	661.5	732.3
355	손해보험	-102.7	-113.5	-126.4	-126.5	-140.0
356	금융및보험관련서비	-111.0	-122.7	-136.6	-136.7	-151.3
357	주택소유	1,774.6	1,960.9	2,182.5	2,184.7	2,418.5
367	청소및소독서비스	-36.5	-40.3	-44.9	-44.9	-49.7
368	농림어업서비스	0.0	0.0	0.0	0.0	0.0
370	중앙정부	1,021.2	1,128.5	1,256.0	1,257.2	1,391.8
371	지방정부	638.9	706.0	785.8	786.5	870.7
372	교육기관(국공립)	1,000.7	1,105.8	1,230.7	1,232.0	1,363.8
373	교육기관(사립)	794.8	878.2	977.4	978.4	1,083.1
374	교육기관(산업)	57.2	63.2	70.3	70.4	77.9
375	연구기관(국공립)	91.7	101.3	112.7	112.9	124.9
376	연구기관(비영리)	-9.3	-10.3	-11.5	-11.5	-12.7
377	연구기관(산업)	-12.3	-13.6	-15.1	-15.1	-16.7
378	기업내연구개발	-294.2	-325.1	-361.9	-362.2	-401.0
379	의료및보건(국공립)	38.5	42.6	47.4	47.4	52.5
380	의료및보건(비영리)	207.7	229.5	255.5	255.7	283.1
381	의료및보건(산업)	333.6	368.7	410.3	410.7	454.7
382	사회복지사업(국공립)	52.9	58.5	65.1	65.2	72.1
383	사회복지사업(비영리)	16.5	18.3	20.3	20.3	22.5
384	위생서비스(국공립)	42.8	47.2	52.6	52.6	58.3
385	위생서비스(산업)	-37.8	-41.8	-46.5	-46.6	-51.6
386	문화서비스(국공립)	51.8	57.2	63.7	63.7	70.6
387	문화서비스(기타)	10.4	11.5	12.8	12.8	14.2
392	산업및전문단체	-37.1	-41.0	-45.6	-45.7	-50.6
393	기타사회단체	92.9	102.7	114.3	114.4	126.6

<국문 요약>

##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효과 -

박기백·이명현

최근 법인의 구조조정, 급격한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세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미시자료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인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의 세액계산 단계별 추정을 시도하였다. 거시 자료 및 세수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결과를 보면 세액계산단계별 추정이 기존의 SUR 추정방식에 비해 예측력이 우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도 중요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운 분야였다. 관세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일 함수에 의한 관세 세수추계 방법에서 탈피하여 수입품을 원자재·자본재·소비재로 구분한 다음 SUR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관세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개별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경우의 세수 효과 연구는 전무하다. 단일 재화, 다수의 재화, 모든 재화가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될 경우의 세수 효과의 수식적 표현을 제시하고 있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Abstract>

Studies on Revenue Estimation Methods  
- Corporate Tax, Customs Tax, and Tax  
expenditures on VAT exempted goods -

Ki-Baeg Park, Myung-Heon Lee

Fluctuation of corporate tax revenue is recently magnified due to fast cyclical pattern of economy and corporate restructuring. On the other hand, accurate revenue estimation is difficult since micro-data is not available. Therefore, the estimation in each stage of corporate tax calculation is conduc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corporate tax revenue estimation. The estimation results based on macro-data and tax revenue data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estimation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more accurate compared to traditionally used SUR estimation method in terms of forecasting capability.

Customs tax is also one of critical tax item that is difficult to estimate revenue. In order to enhance the accuracy of customs tax revenue estimation, the SUR regression model is applied to classified imported goods, such as raw material, capital goods, and consumption goods.

Studies on the taxing effects of tax exempted VAT goods have been rarely attempted. In particular, the change of tax revenue when single VAT exempted goods converted to taxable item has never been studied. In this study,

mathematical expressions of effect on tax revenue when single goods, several goods, and all goods converted from tax exemption to taxable items are presented. The estimation of foregone tax revenue is conducted by using input-output tables.

<著者略歷>

朴寄白

서울대학교 經濟學科 卒業  
美國 Wisconsin-Madison大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李明憲

서울대학교 經濟學科 卒業  
獨逸 Göttingen大 農業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研究報告書 00-03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

---

2000年 12月 28日 印刷

2000年 12月 30日 發行

著者 朴寄白·李明憲

發行人 柳一鎬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2186-2114(代), 팩시밀리：2186-2179

登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研究院 2000

ISBN 89-8191-176-2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500 원